

NEW ZEALAND 

뉴질랜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NEW ZEALAND 

뉴질랜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프랑스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발간된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뉴질랜드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에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기보연



Contents

제1장 뉴질랜드 개관	1
1. 뉴질랜드 국가개요	3
2. 정치·경제 동향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6
제2장 뉴질랜드 조세제도	9
1. 조세제도 개괄	11
2. 법인세(Business Income tax)	13
3. 개인소득세	28
4. 부가가치세(GST)	35
5. 국제조세	51
6. 전자상거래와 조세	60
7. 기타세제	62
8. 주요 개정 사항 정리	66
9. 불복제도	68
제3장 기타 뉴질랜드 정보	71
1. 뉴질랜드 국가 정보	73
2. 뉴질랜드 비즈니스 정보	80
3. 뉴질랜드 생활정보	94

제4장 부 록	103
1. 한국과 뉴질랜드의 주요 협정	105
2.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	106
3. 참고 사이트	134
4. 출처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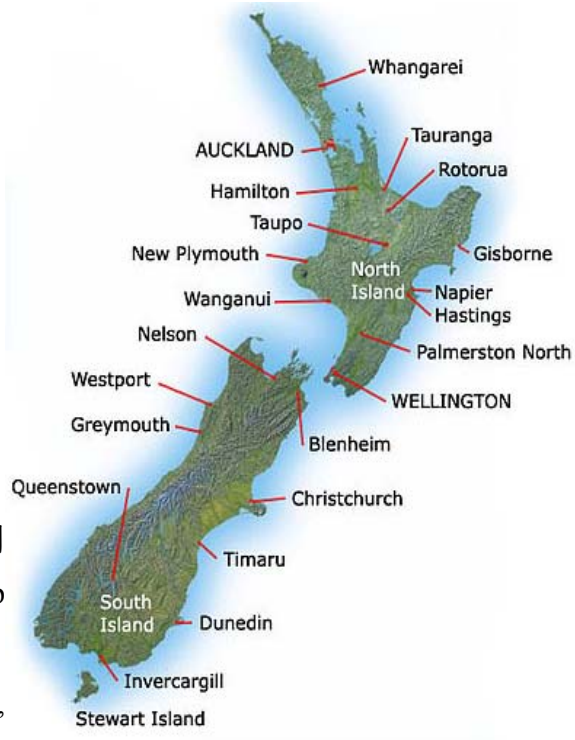


제 1 장 뉴질랜드 개관

1. 뉴질랜드 국가개요
2. 정치·경제 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뉴질랜드 국가개요

- 위치 : 대양주 남단
- 수도 : 웰링턴(Wellington)
- 인구 : 4,444,358명(2012년 기준)
- 언어 : 영어, 마오리어
- 면적 : 267.710km²
- GDP : 1805억\$(2012년 기준)
- 1인당 GDP : 약 40453\$(2012년 기준)
- 건국일 : 1907년 09월 26일
- 정치 : 영연방 입헌 군주제 체제
- 수상 : 존 필립 키(John Phillip Key)
- 종교 : 뉴질랜드 성공회 24.3%, 장로교 18.0%, 가톨릭 15.2%
- 인종 : 유럽계 백인 87%, 마오리족, 폴리네시아인
- 통화단위 : 뉴질랜드 달러(NZD)
- 환율 : 1NZD=894.84(2013년 6월 21일 기준)



1. 정치동향

□ 정치체제

- 영국 여왕이 상징적 국가원수이나, 뉴질랜드 총독이 권한을 위임받으며 국정업무는 총리가 수행
- 의원내각제이며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나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 현재 실권자는 존 필립 키 제 38대 총리

□ 최근의 주요 동향

- 2004년 독자적 최고법원인 뉴질랜드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New Zealand) 창설, 사법권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 2008년 당시 국가의 모든 최고권력을 여성 지도자들이 지닌 세계 유일무이의 국가
 - 총리(헬렌 클라크, 1999~2008), 국회의장(마가렛 윌슨, 1999~), 총독(실비아 카트라이트, 2001~2008), 대법원장(시안 엘리스, 2004~)
- 2013년 4월 17일 세계에서 13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

2. 경제동향

□ FTA의 확대

-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시도하며, 최근 러시아,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FTA 추진
 - 뉴질랜드의 Tim goser 무역장관은 APEC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 약속

- 존 키 총리는 APEC 정상회담 후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 문제를 협의

-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추진현황 -

구분	발효	협상 타결	협상 중	협상 검토 중
협정	호주 CER('83.발효) 중국 FTA('08.발효) ASEAN FTA('11.발효) 말레이시아 FTA('10.발효) TPP P4('06.발효) 태국 CEP('05.발효) 싱가포르 CEP('01.발효) 홍콩 CEP('11.발효)	GCC FTA ('09.타결)	한국 FTA('09.개시) 인도 FTA('10.개시) 러시아연방 FTA('11.개시) TPP('10.추가 개시)	일본

주 : 2011년 7월 15일 기준, 중복되는 국가는 국가 수 계산에서 제외
출처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 수출시장의 변화

- 2013년 1분기 뉴질랜드 최대 수출시장 자리를 중국이 처음으로 차지
- 올 1분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7%의 증가율을 보이며 호주를 제치고 뉴질랜드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장

- 뉴질랜드의 최근 국별 수입통계 -

(단위: 백만 NZD, %)

순위	국명	2012년		2013년	
		연간	증감률	1분기	증감률
1	중국	7,711	3.7	1,756	2.8
2	호주	7,188	-2.5	1,514	-5.3
3	미국	4,387	-12.7	1,018	-14.1
4	일본	3,054	4.5	676	-2.2
5	한국	1,809	24.4	497	18.2
6	독일	2,098	5.2	447	1.0
7	말레이시아	1,815	22.8	442	21.2
8	싱가포르	2,110	-2.4	403	-22.9
9	태국	1,510	13.5	384	21.5
10	오만	1,174	418.0	304	-23.9

출처 : 뉴질랜드 통계청

- 뉴질랜드의 최근 국별 수출통계 -

(단위: 백만 NZD, %)

순위	국명	2012년		2013년	
		연간	증감률	1분기	증감률
1	중국	6,862	16.6	2,306	31.7
2	호주	9,847	-9.2	2,170	-7.3
3	미국	4,242	6.1	1,164	10.1
4	일본	3,211	-6.7	674	-9.2
5	한국	1,551	-7.4	403	10.0
6	영국	1,396	-9.6	383	-4.3
7	싱가포르	845	4.0	217	15.5
8	인도네시아	839	-2.0	209	-8.5
9	대만	829	-7.8	201	10.5
10	홍콩	870	9.0	192	-12.1

출처 : 뉴질랜드 통계청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뉴질랜드 전통적 관계

- 1949년 뉴질랜드가 한국을 승인한 이후, 1962년에 정식 외교관계 수립
- 1950년 6.25 전쟁에 참전(5,350명 참전, 45명 전사)
- 1971년 6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개설, Richard Nottag 대사 대리 부임
- 1971년 7월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개설, 박영 대사 대리 부임
- 1978년에는 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9년부터 해마다 통상장관회담이 개최

정치적 관계 : 양국 간 국가 고위인사들의 교류 지속

- Tim Groser 통상장관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상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관과 면담
- 2012년 6월 유영숙 환경장관은 뉴질랜드 환경장관 양자회담
- Bob Parker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2012년 5.3~5.11 8일간 한국의 남극연구소 및 크라이스트처치 자매도시인 송파구 방문

□ 사회적 관계 : 한국-뉴질랜드 공동연구 진행

- 뉴질랜드 환경부와 한국 법제연구원이 탄소배출권 시장관련 공동연구에 합의
- 농촌진흥청, 축산 선진국 호주·뉴질랜드와 연구협력 진행
- 한국-뉴질랜드 영화 공동제작 협정
- 과학부처간 체결된 과학기술 협정에 따라 1차 중점프로그램(환경, 바이오테놀로지, 재료과학)이 진행, 2차 중점프로그램(식품 및 재생에너지, 나노테크놀로지 분야) 착수

□ 경제적 관계

- 2013년 대 뉴질랜드 수출 14억 6411만 달러로 전년대비 32.6%증가
- 뉴질랜드와의 교역에서 2년 연속 적자를 내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 수출 주종 품목은 휘발유, 승용차, 건설 관련 기자재였으며 수입품은 원목, 낙농품, 가축 육류
 - 고급 소비재(스마트폰, 자동차, 고급 TV 등)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의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면서 우리 상품의 현지 진출 확대 예상됨
- 2012년 법인투자현황

(단위 : 개, 천USD, 건)

신고 법인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488	275	388,842	770	215,612

출처 : KOTRA

○ 뉴질랜드 진출 기업 현황

기업명	진출연도	연간매출(천USD)
대한전선뉴질랜드	2009	7000
LS전선	2010	30,000
현대자동차	2009	-
사조오양	1979	-
(주)지오엠	2009	7000
동원수산티마루기지	1996	-
(주)동남 뉴질랜드사무소	1991	30,000
주암산업(주)	2004	-
한솔 뉴질랜드	1996	-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1996	-

출처 : KOTRA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합의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이 무역협상위원회 운영규칙에 합의(2013.5.14)
-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작업 병행
- 상이한 각종 규정 확인에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어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반감시키는 스파게티 볼 효과감소 기대



제 2 장 뉴질랜드 조세제도

1. 조세제도 개괄
2. 법인세(Business Income tax)
3. 개인소득세
4. 부가가치세(GST)
5. 국제조세
6. 전자상거래와 조세
7. 기타세제
8. 주요 개정 사항 정리
9. 불복제도

1 조세제도 개괄

□ 주요조세

- 법인소득 및 개인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실시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28%의 단일세율로 법인세 과세
 -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4단계로 구분하여 10.5%~33%의 누진세율로 개인소득세 과세
 - ※ 2010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법안 통과하여 시행 중
 - 복지제도가 세금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세금은 공제 없이 납부하고 복지수당은 정부로부터 별도로 받음
-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15%의 단일 세율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 Tax) 과세
-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로는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가 있음
- 기타 조세로는 부가급부세, 키위세이버,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존재
 - 부가급부세(FBT: Fringe Benefit Tax)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급여 이외에 부가급부 제공시, 일정금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제
 - 키위세이버(Kiwisaver)란 뉴질랜드 연금제도 보완 위해 고안된 자발적 형태로 운영되는 근로 대상 저축 제도
 -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존재하지 않음
 - 상속세는 1992년, 인지세는 1999년, 증여세는 2011년에 폐지

□ 납세의무자

- 소득의 원천 및 거주자 요건에 따라 과세
 - 거주자의 경우 회사 및 개인, 단체 종류를 불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의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과세
- 세법상 거주자 판단 요건
 -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자
 - 그 외에도 뉴질랜드 거주기간, 주택 보유, 경제 여건, 고용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며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과세연도 및 납부 방법

-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1과세연도이며,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과세연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음
 - 매 회계연도 말 (3월 31일)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소득세를 신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 해외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 합산신고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PAYE: Pay As You Earn) 와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RWT,NRWT)를 지님
 - PAYE에는 일종의 국가 보험인 ACC LEVY가 포함
 - 고용주는 PAYE외에도 급여에서 학생대출상환금, Child support, 키위세이버를 공제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원천별로 완전하게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예정세액을 소득발생연도 동안 3회의 예납을 거쳐 납부 하고, 차기 연도에 확정세액을 산출하여 최종 납부
-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단순누락의 경우 20%, 조세회피의 경우 150% 등의 가산세가 부과

2 법인세(Business Income tax)

1. 개요

가. 납세의무자

□ 거주자

- 뉴질랜드 거주자 기업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 기업은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담
- 거주자 기업의 조건
 - 뉴질랜드에서 법인을 설립
 - 본사가 뉴질랜드에 위치
 - 법인의 핵심적 경영활동을 뉴질랜드에서 수행
 - 임원들이 주요 법인 관리와 통제를 뉴질랜드에서 행사
(임원들의 결정이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지와 무관)
- 뉴질랜드 비거주자 기업 중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거주하는 기업의 경우 승자판정(Tie-breaker) 조항에 의해 잠재적 이중과세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음

□ 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 형태

- LTC(long through company)를 제외한 등록 기업, 협력 기업, 생명보험회사, 법인단체
- 포트폴리오 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 법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schedule 1에 따라 법인세율 적용받는 특정 저축 수단
- 계약형 투자신탁(Unit trusts)

- 법정 생산자 회의(Statutory producer boards)
- 단체 투자 펀드(일부 소득은 제외)

나. 과세구조

□ 법인세율

- 모든 기업은 동일한 법인세율의 적용

사업연도(income year)	법인세율
2008년 이전	33%
2009년~2011년	30%
2012년 이후	28%

※ LTC(long through company)는 예외

□ 사업연도(Income year)

- 회사의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결산일을 끝으로 하는 12개월의 기간
 - 대부분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설정하나(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 강제적 사항은 아님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아래 항목을 고려한 회계 조정 후 결정
 - 감가 상각(Depreciation)
 - 주식 매매(Trading stock)
 - 금융 약정(Financial arrangements)
 - 자본계정의 법적비용 및 기타비용
 - 접대비
 - 임대료
 - (세금 신고 시 회계상의) 유보와 준비금

-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 배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총 수익의 일부를 형성
 - 과세목적의 배당의 개념은 법인이 주주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혜택을 포괄하기 위해 회사법(Company act 199)상의 정의보다 광의의 개념
 - 다른 뉴질랜드 거주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수취인이 세금납부 의무 부담
 - 100% 동일한 방식으로 소유된 기업 간에 주어진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하청업체와 자매기업(소유방식이 동일한 기업) 간의 제공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이자는 과소자본세제를 조건으로 공제
- 손실은 소유권이 49%이상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연도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특별 제도(Special regimes) 마련
 - 특별 규칙은 생명 보험 법인, 그룹 투자 펀드, 비거주자 보험, 선주, 광업, 임업, 일부 영화대여법인 와 같은 기업들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적용

□ 손실의 그룹화(Grouping of losses)

- 동일 그룹에 속한 법인은 각각 별도로 세금을 부담
- 동일 그룹에 속한 법인 간 손실을 공유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 필요
 - 손실을 본 법인의 소유권이 49%이상 연속성을 보여야하고
 - 동일 그룹 내 법인 간 소유권의 66% 이상이 동일하여야 함
 - ※ 소유권의 연속성과 공통성은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전반의 주주의 최소 투표권행사나 시장가치이자 기준으로 측정
- 그룹 기업은 이익을 보는 법인이 손실을 보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간단한 손실 차감계산을 통해 그룹 기업 간 손실을 공유
 - 이익을 보던 기업은 이러한 보조금 또는 손실차감으로 공제혜택

- 손실을 보던 법인은 지급받은 보조금 등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 부담

2.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가. 손금산입

□ 개요

-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소득 중 손금을 제외한 금액
-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납세의무자는 구매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비용의 구체적 예
 - ① 자동차
 - ② 거주용 집(Using home for the business)
 - ③ 비품
 - ④ 출장비(Travel expenses)
 - ⑤ 보험료
 - 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⑦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 ⑧ 복지비와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 ⑨ 고정자산(Fixed asset)

※ 단, 1년 이상 사용 할 고정자산은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 마일리지율(mileage rate)

- 고용주는 고용인이 업무목적으로 개인용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목적으로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마일리지율 적용하여 비용 인정 가능

- 비용청구를 위한 마일리지율은 실제 비용, 업무 일지 등을 기반으로 적용

□ 자가 소유 운송 수단 이용비

- 1인 기업 또는 동업기업을 운영하는 때, 사업에 사용되는 자가 소유 운송 수단의 러닝코스트(running costs) 청구 가능
 - 오직 사업용으로 사용 시 러닝코스트 전액 청구 가능
 - 출퇴근과 기타 개인용으로 일부 사용 시 사업용 이용에 대한 비용만 청구가능
- 회사 소유 자동차는 사용비율에 따른 조정 없이 전액 청구 가능하나 고용인이 이용가능 한 자동차인 경우 부가급부세(FBT)를 부담
 - 부가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부담 의무 또한 발생

□ 출장비

- 사업목적의 출장비용은 청구 가능하며 사업차 출장임을 입증하는데 출장 일정표 기록이 좋은 수단이 됨
- 청구서와 각종 티켓 외에도 아래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출장목적, 출장일자, 일정표, 각종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사업목적과 사업 목적이 아닌 활동시간 구분

□ 거주하는 공간 사용 비용

- 작은 사업체 운영 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때
 - 주된 용도가 사무실 또는 창고와 같은 사업용 목적이고
 - 사용비용을 기록하여 증빙으로 인정 시 사업 목적 비용으로 인정
- 다른 사업비용과 동일하게 청구서와 사용기록 보관 의무
 -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만큼 비용청구 가능

□ 복지비와 접대비

- 고용인 복지나 고객 접대로 사용되는 비용은 공제 가능

- 업무목적 출장, 대중 대상 프로모션, 특정회의에서 제공되는 식음료는 전액 공제 가능
- 기타 복지 및 접대비는 50%만 공제가능
 - ※ Entertainment expenses (IR268)에 자세한 안내 이용 가능
-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청구서와 영수증 보관 필요

□ **업무 환경 관련 비용(Environmental expenditure)**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Schedule 19에서 공제 가능한 기타비용과 공제율을 설정

지출용도	공제율
시험과 실행 비용	100%
건설 또는 개선 비용	1/35 또는 1/허가된 자원활용기간
복구 비용	100%
감시·감독 비용	100%

나. 감가상각

□ **개요**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 만큼 소득에서 공제
 - 내구연한이 12개월 이상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청구하여야 함
 - 토지와 같이 고정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감가상각방법에는 정률법(diminishing value)과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이 존재
 -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한 과세기간 내에 서는 하나의 자산 당 하나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함
 - 다음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

- 감가상각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
- 감가상각률은 국세청에서 자산의 가격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결정
 - 정률법과 정액법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률은 구입 시기에 따라 다름
 - 1993-2005 감가상각률 : 1993년 4월 1일~2005년 3월 31일에 구입한 자산과 1993년 4월 1일~2005 5월 18일에 구입한 건물
 - 2006 이후 감가상각률 : 2005년 4월 1일 이후 구입한 자산과 2005년 5월 19일 이후에 구입한 건물

□ 감가상각 대상인 고정자산

- 해당 사업체 소유의 1년 이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
-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를 입증

□ 감가상각방법

- 정률법
 - 감가상각은 조정된 가격에 대해 이루어짐
 - 조정된 가격은 원래 가격 또는 전년도 조정된 가격에서 less depreciation already claimed을 차감한 가격
 - ※ less depreciation already claimed = 전년도 가격 × 감가상각률
 - 가격은 GST를 제외한 가격
 - ※ 예) 30,000달러의 고정 자산 구입(감가상각률 30%)

구분	year 1	year 2	year 3
원래 가격	30,000	30,000	30,000
less depreciation already claimed	0	9,000	6,300
조정된 가격	30,000	21,000	14,700
감가상각 청구액	9,000	6,300	4,410

○ 정액법

-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래 가격에 대해 이루어져 매년 동일한 감가상각액만큼 공제됨
- 정률법과 동일하게 가격은 GST를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 ※ 예) GST 제외 가격이 30,000달러이고 감가상각률이 21%이면 매년 6,300 달러만큼 감가상각 허용

○ 자산 집합(Pooling assets)

- 자산 가치가 작은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감가상각하기 보다 개별자산들을 하나로 묶어 감가상각하는 pool system를 사용할 수 있음
- 자산 집합에 대해서는 정률법만 적용가능하며 감가상각률은 각 자산의 감가상각률 중 가장 낮은 율을 따름
- ①개별 자산의 가치가 2,000달러 이하거나 조정된 가격이 2,000달러 이하이고 ②모두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거나 사업 목적 사용비율이 100% 미만이나 부가급여세 대상인 자산은 자산집합(Pooling assets) 적용 가능
 - ※ 500달러 이하 소액 자산은 취득 한 해에 전액 공제 가능

3. 배당세액공제

□ 간접배당세액공제제도 (Dividend imputation system)

○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

- 회사에서 법인세 납부 후 세후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때,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 발생
- 뉴질랜드에서는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중 주주에게 귀속되는 법인세 부분은 100%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간접배당세액공제제도 시행
-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세는 주주의 '귀속 공제액(imputation credit)'이 되어 주주의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 세금으로 전액 세액 공제 됨

○ 주주에게서 원천 징수되는 배당세액 (RWT)

- 배당에 대한 $RWT = (a \times (b + c)) - c$
 - a = 33%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 b = 배당금 실지금액
 - c = 귀속 공제액 (imputation credit)
- b + c 금액이 법인세 납부 전 법인의 이윤이고, 귀속 공제 비율(Imputation credit ratio)에 따라 배당금지금액(b)과 주주에게 귀속되어 나중에 세액공제 받게 되는 법인세 부분(c) 으로 나뉨

◆ 귀속 공제 비율 (Imputation credit ratio)

- 주주에게 배당되는 부분과 법인세로 지급되어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의 비율을 의미
- 법인세가 30%에서 28%로 인하됨에 따라 Imputation credit ratio은 30/70에서 28/72로 변화

- 배당금 원천징수세율인 33%가 배당받는 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귀속 공제액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원천징수 되는 배당세액이 됨

○ ICA(Imputation Credit Account)

- 회사가 28%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주주에게 배당 시 납부한 법인세만큼 귀속 공제액을 전액 줄 수 있는 권리 발생
- 법인세 납부로 얻게 된 Imputation credit의 권리와, 배당금 지급 내역을 기록하는 계좌인 ICA 개설 의무가 있음
- 법인세 납부 시 발생한 금액을 ICA credit 부분에,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시 ICA debit 부분에 기록

4. 기업 활동 형태 별 법인세

□ 합병(Amalgamation)

- The Companies act 1993 하에서 법인 간 합병이 가능
 - 합병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결합되어 하나의 법인처럼 계속되는 경우를 의미
 - 이때 합병된 법인은 기존의 법인 중 하나가 되거나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음
 - 합병과정에서 기존 법인들은 폐업 가능
- 합병이 적격 합병일 때 세금 부과를 위해 특정 양보적 세금규칙(Concessionary tax rules)이 적용

□ QC(Qualifying companies)

- 2011년 4월 1일 이전에는 특정 소유집중법인(closely held company)은 QC가 되는 것을 선택 가능하였음
- QC체제는 2011/2012 회계연도부터 신규법인에게 불허
 - 2011년 3월 31일 기준 존재하고 있는 적격법인은 계속하여 적격법인으로서 세금을 부과 받을 것인지 LTC(look through company)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 가능
- 세금과 관련해서 QC는 합명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허용
 - 분배가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뉴질랜드 거주자인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면제함으로써 법인 수입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청산 요구 없이 조세 부담 없는 자본 이득 분배가능
 - 소득세는 제외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유지
- 2011년 4월 1일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QC가 가능하였음
 - 계약형 투자신탁이나 외국 기업이 아니고
 - 배당소득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10,000 달러 미만이며
 - 5명이하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 법인주주는 또한 적격법인인 경우
- 또한, 법인 주식이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질 때 주주는 LAQC(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
 - 역사적으로 LAQC의 주주들은 이윤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손실은 그들의 한계세율로 공제되도록 가능했으나
 - 손실을 주주의 몫으로 돌리는 방법은 2011년 4월1일부터 불허

□ LTC(Look-through companies)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은 'look-through company(LTC)' 라는 특수한 기업 개념 도입
 - LTC는 유한책임 등 회사법을 따르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 손실제한규칙의 적용을 조건으로 매년 지분을 기준으로 모든 이익과 손실을 주주에 할당하며, 각 주주는 자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
- 기존 QCs 및 LAQCs는 2013년 3월 31일까지 LTC 규칙을 따를 것인지 선택 가능

□ 생명 보험 및 일반 보험 법인

- 2010년 7월 1일부터 생명 보험사의 사업소득은 주주소득과 보험계약자 소득으로 분류
 - 다른 사업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주소득은 법인의 세율로 과세
 - 포트폴리오 투자 법인(PIEs) 규칙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
- 2010년 7월 1일부터 과도기적 규칙이 기존의 생명보험정책에 적용
- 뉴질랜드 거주 일반 보험 법인의 해외 지사 보험 사업에 세금 부과
 - 해외 재보험보험료는 공제가능하고 그 재보험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보상은 과세
 - 효과적인 2.8%의 세금이 보험료 및 해외에서 지불한 재보험료에 부과됨

□ 광물 및 석유 산업

- 일반적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 특정 산업 규칙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특정 규정은 개발 및 탐사 비용의 공제에 적용
- 비거주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지진 조사 선박과 시추 장치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 면제
 - 소득세면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적용
 - 소득세 면제외는 별개로 비거주기업은 GST나 employee tax를 납부할 의무는 있음

□ 계약형 투자 신탁(Unit trust)

- 조세 목적으로 법인으로 취급
 - 법인세 모델이 계약형 투자 신탁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소득과 상환 이익의 분배에 적용
 - 이러한 거래를 위해 계약형 투자 신탁 투자자는 배당을 받는 것으로 간주
 - 이 때 배당은 계약형 투자 신탁이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귀속공제(imputation credits)를 일반적으로 동반
- 자격을 갖춘 계약형 투자 신탁에게는 정부가 혜택 부여
 - 주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신탁의 계약형 투자 신탁 투자자는 개념적으로 한 사람으로 취급
 - 이로 인해 계약형 투자 신탁 은 손실과 귀속공제(imputation credits) 이월 가능

5. 사업 초기 유의점

□ 사업 시작 시 법인세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사업 첫 해의 이윤에 대한 세금부터 다음 해에 납부시작
- 비용분산을 위해 자발적 세금납부 제도 이용가능
 - 사업 첫 해, 자발적 세금납부 시 납부세액의 6.7% 공제와 같은 조기납부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음
- 사업 첫 해, 자발적 세금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 31일을 결산일로 하여 두 번째 사업연도의 2월 7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결산일을 3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원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1년 간 3회 분납하여야 하며 이를 예납세 (Provisional tax)라 함

6. 행정사항

가. 예납세

예납세 납부 대상자

- 전년도 법인세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2,500달러 이상인 경우 예납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

예납세 계산법

- Standard uplift method
 - 납세의무자의 전년 실제 납부세액인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 RIT)를 기준으로 함
 - 일반적으로는 전년 잔여소득세의 105%, 예외적으로 전년 세무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 잔여소득세의 110%
 - 한 해의 마지막 분납은 전년 잔여소득세의 105%를 기준으로 해야 함

- 2012/2013에는 조정된 uplift rule이 적용되었으나 2013/2014에는 general uplift가 적용

○ Estimate method

- 국세청에서 예측한 당해 연도 소득 기준으로 예납세 납부
- 납세의무자는 성실납부의 책임을 지고 과소납부 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 GST ratio method

- 예납세 분할납부기간 내 GST 과세대상 공급을 기준으로 함
- 소규모 사업자만 선택가능한 방법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해 예납세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Voluntary payments : 납세의무자는 납부예정액 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음

나. 연체료와 과소납부벌금

연체료

- 최초 연체료는 1%, 납기일 7일 이내 미납부시 4%
 - 납부될 때 까지 매달 1%의 가산세 부과
- 국세청은 최초 연체 시에 연체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고, 그 후 2년에 한번 씩 연체통지

과소납부벌금

-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벌금리가 결정됨

위반의 정도	징벌금리(Penalty rate)
Lack of reasonable care	20%
Unacceptable tax position	20%
Gross carelessness	40%
Abusive tax position	100%
Evasion	150%

- 주의 부족(Lack of reasonable care)
 -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상황 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reasonable care)를 다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에게 주의의무란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기록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계산실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법리오해(Unacceptable tax position)
 - ①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② Income tax 납부액이 부족하며, ③ 부족액이 5만 달러와 부족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 세액의 1%를 초과한 경우 20%의 징벌 금리 적용
 - ※ 법적 기준 미충족의 예 : 공제되는 자산으로 잘못 법 해석한 경우
- 중과실(Gross carelessness)
 - 납세 부족액이 중대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
 - 납세의무자의 고의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고의적 과소납부(Abusive tax position)
 - ① 법리 오해의 고의적 과실이 있으며, ②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인 경우
 - 납세부족액이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00%의 징벌 금리 부과
 - 납세 부족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임을 판단하는 데는 의도성, 계획성, 순환적 자금조달, 정보은폐, 비합리적 법리 해석 등을 고려
- 고의적 미납부(Evasion)
 -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제나 원천징수세를 활용하여 조세납부를 회피하거나,
 - 환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환급을 받았으며,
 - 법에 위반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를 고의적 미납부라 함
 -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부과 전 기소 가능

1. 개요

□ 거주자

- 뉴질랜드의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 각 분류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과세범위에 차이를 둠
 - 세법상 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 세법상 비거주자는 뉴질랜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거주자 판정의 핵심기준은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인지 여부
 - 뉴질랜드가 납세자의 ‘거주지’로 간주되면 체류일수와는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
 - ‘거주’ 여부는 주거지 여부와 형태, 가족과 사업 및 고용관계, 소유자산의 종류, 체류목적과 의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
 -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로 간주될 요소들이 남아있는 납세자라면 해외로 이주하여 상당기간이 지났어도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음
- 거주자 판정의 두 번째 기준은 12월 동안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은 초과하는지 여부임
 - 입국일과 출국일 모두 체류기간으로 간주됨
 - 체류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입국일로부터 소급하여 거주자로 간주함
 - 12월 동안 국내 부재기간이 325일을 초과한다면 출국일로 소급하여 비거주자로 간주, 단 영구거주지가 있는 개인은 제외됨
- 세법상 거주자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협약을 맺은 국가로 이주하여 해당국가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승자판정테스트(tie-breaker test)를 통해 국가

별 납세범위 결정

- 두 국가 중 거주지가 있는 곳, 가족과 재산이 있는 곳,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 등을 고려

□ 개인 소득세 계산방법

	Income		Rent, Wage, Interest . . .
-	Expenses		Income을 얻기 위한 비용
=	Taxable Income		
×	Tax rate		개인소득세율
=	Tax		
-	Tax Credit		PAYE, RWT등 원천징수한 세금
=	Residual Income Tax		
-	Provisional Tax		예납세액
=	Refund of Tax to pay		

-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하여 세금 계산
- 세금에서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한 Tax Credit(PAYE, RWT 등)을 차감하여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 계산
- 세금 예납제도에 의해 미리 납부한 예납세(Provisional Tax)를 비교하여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세액 결정

□ 개인 소득 세율

- 누진 세율이 적용되며, 2010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인하된 소득세율 적용
(단위 : NZD, %)

과세표준	세율
14,000 이하	10.5
14,000초과 ~ 48,000이하	17.5
48,000초과 ~ 70,000이하	30
70,000초과	33

2.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Employee remuneration)

- 근로자의 노동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현금
- 고용주가 지불하는 근로자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
 - 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배상받는 금액은 근로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주로부터 제공되는 식사나 숙소, 혹은 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
- 은퇴수당이나 퇴직수당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란 영리목적으로 전문용역, 매매, 제조, 혹은 운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독립된 상인으로서 혹은 회사를 통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법인과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결손금은 무기한적으로 이월공제 받을 수 있지만, 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이자소득(Interest income)

- 거주자가 받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됨
 - 소득에 따라 10.5%, 17.5%, 30%, 33%의 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내의 이자소득도 원천 징수되며, 세율은 뉴질랜드가 각 나라와 맺은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결정

□ 배당소득(Dividend income)

-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33%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됨
-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배당세액공제제도 존재
 - 기업 이윤으로부터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급되는 배당금을 주주소득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 발생
 - 뉴질랜드의 경우 배당금 수입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가 100% 조정됨
 - 원천 징수된 세금은 납부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Tax credit으로 사용
- ☞ 간접배당세액공제제도 참고 (p.24)
- 비거주자의 뉴질랜드 내의 배당소득도 원천 징수되며, 세율은 뉴질랜드가 각 나라와 맺은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결정

□ 해외투자소득

- 국외 회사나 기타 국외 독립체에 대한 투자는 이 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뉴질랜드로 송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 가능
 - 해외 투자펀드 규정의 처리방식에 따라 과세 달라짐
- 해외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해외투자펀드 규칙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연금 영수증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외에 은행계좌와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환율 변동에 의해 세금이 변동될 수 있음
- ☞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참고 (p.72)

□ 연금소득

- 노후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은 만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수령할 수 있음
 -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그 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함
- 개인 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 단, 연금 수령 대리인으로서 수탁자나 생명보험회사가 수령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과세

3. 세무행정

□ 신고와 납부

- 소득세 신고기한은 tax agent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통상 3월 31일 까지
 - tax agent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7월 7일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근로,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됨
- 뉴질랜드 국세청 홈페이지 www.ird.govt.nz 에서 온라인 신고, 각종 정보 확인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 세금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온라인 기능이 있는 세금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
 - * GST신고, IRD넘버신청 GST 등록, PAYE등록(고용주등록), 개인소득세 신고(IR3)
-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지난해 세액기준으로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예납세(Provisional Tax) 제도 존재
 - 납세자는 이익의 발생시점에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일시 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납부대상은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가 2,500불 이상인 납세자이며, 주로 사업소득·임대소득과 같이 연중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됨
- 일반적으로 예납세는 총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3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납세자라면 1차 납부일은 8월 28일, 2차와 3차는 다음해 1월 15일과 5월 7일임

□ 원천징수제도

○ PAYE(Pay As You Earn)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구간에 따른 한계세율 적용
- 모든 직원은 일하기 전에 Tax Code Declaration(IRD 330)을 작성하여야 하고, 고용주는 직원의 Tax Code에 따라 PAYE 계산
- 고용주는 모든 급여기록을 7년동안 보관해야 함

○ 거주자 원천징수 세금(RWT: Resident withholding tax)

-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자는 RWT를 원천 징수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RWT는 국세청에 납부
- 원천징수 된 소득도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고, 원천징수 된 세금은 납부할 세금을 경감시키는 Tax credit으로 작용
- 각 개인은 은행 계좌 개설시 본인의 납세자번호(IRD number)를 제출해야 하며, 이자소득자가 이자지급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인 33%로 과세됨
- 배당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접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imputation system) 존재
 - 회사는 납부한 법인세만큼 주주에게 귀속된 세액을 공제(imputation credit) 해줄 수 있고 이를 ICA(Imputation credit account)에 기록할 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금(NRWT: Non-resident withholding tax)
 - 비거주자가 뉴질랜드에서 얻은 이자, 배당, 로열티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금을 내야하며, 세율은 뉴질랜드가 각 나라와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
 - 한국의 경우 이자는 10%, 배당금은 15%, 로열티 소득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 뉴질랜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NRWT를 원천징수 하고 싶지 않다면, 국세청에 Approved Issuer 신청 가능
 - 요구 조건 충족 시 NRWT대신 2%의 Approved Issuer Levy만 납부

□ 면세소득

- 일반적으로, 면세 소득규정은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마련
 - 사회제도법률 혹은 전쟁연금법률에 의한 금융소득
 - 교육기관 수강자로서 수여한 장학금
 - 개인연금 대신에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국외 연금
 - 생명보험의 정책상 지급된 연금도 비과세 대상
- 2012-13 과세연도부터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연간 2,340 달러 이하의 능동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면세함
- 비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이 과세기간의 92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음
 - 발생된 소득은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자녀공제, 실업공제 등이 존재
- 저소득층 세액공제, 아이돌보기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세액공제, 아이들의 능동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2-13 과세연도부터 폐지
- 뉴질랜드는 복지제도가 세제와 별도로 운영되어 한국과 같은 급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4 부가가치세(GST)

1. 개요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가가치세(GST)는 뉴질랜드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대부분의 수입 재화, 특정 수입 용역에 부과되는 조세로 15%의 단일세율로 부과됨
 - 재화에는 돈을 제외하고, 개인 및 부동산의 모든 유형을 포함
 - 용역에는 재화와 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루며 예를 들어 TV 수리, 의사의 용역과 원예 용역 등이 있음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용역
 - GST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 일부 면세 대상
 - ① 개인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임대
 - ② 이자소득
 - ③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는 기부된 재화와 용역
 - ④ 특정 금융 용역

□ GST 과세방법

- GST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 판매 시 징수하는 GST에서 매입 시 부담하는 GST를 차감한 만큼 국세청에 납부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GST를 부담

◆ GST 계산방법

- 판매 시 납부하여 할 GST = (판매소득*3)/23
- 구입 시 돌려받을 GST = (구입비용*3)/23
- 둘의 차액만큼 GST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음

□ GST 등록 시 혜택

- 사업자가 GST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GST 세무보고(GST return)는 사업자의 정보를 최신이며 정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
 -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GST에 등록된 사업자와 사업하기를 선호
 - GST를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의 과세기간동안(1개월, 2개월, 또는 6개월) GST 납부액을 사업에 사용 가능
 - 재화나 용역 구입 시 소득세신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납부한 GST를 돌려 받을 것을 요청 가능

□ GST 등록의무자

- 과세대상활동(taxable activities)이나 매출액(turnover)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GST 등록의무가 있음
 - ① 지난 12개월 동안 6만 달러이상 활동하거나 ② 앞으로 12개월 동안 6만 달러이상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③ 6만 달러 이하이지만 GST를 포함하여 거래한 경우 등록의무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6만 달러이상 활동하더라도 대규모시설 또는 자본자산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등록의무가 면제됨
 - 과세대상활동 중단한 경우
 - 상당한 규모로 과세대상활동을 축소시킨 경우
 - 대규모시설 또는 자본자산을 대체시킨 경우

◆ 주의사항

- 등록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등록하여야함
- 자가 평가를 통해 기간이 정해지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과세대상활동(taxable activities)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무역, 제조, 협회 등의 활동을 의미
 -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활동이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윤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때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공급(taxable supplies)이라 함

◆ 과세대상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 월급이나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
- 회사 이사의 활동
- 취미나 개인 여가 활동
- 가정용품 등 비정기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는 개인적 거래
- 면세활동
 - 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 공간 임대
 - ② 이자소득
 - ③ 비영리 기관이 제공하는 기부된 재화와 용역
 - ④ 특정 금융 용역

- 매출액(turnover)은 모든 과세대상활동에서 총 매출액에서 GST를 뺀 매출액의 크기를 의미
 - 대부분의 사업에서 매년 매출액은 판매소득과 ① 보조금, ② 물물 교환, ③ 수입 용역의 총 가치의 합이 됨

○ GST 등록의 특수 유형

등록유형	특성
자발적 등록자 (Voluntary GST registration)	연간 매출액이 6만 달러 이하
비영리단체 (GST registration of non-profit bodies)	비영리단체가 등록 시 각 분점은 개별적으로 취급됨
개별 등록 (GST registration of separate branches or divisions)	사업을 개별 지점별로 운영 시 각 지점별로 등록 가능
그룹 등록 (GST group registration)	그룹으로 등록 시 그룹을 대표해 세무보고를 할 대표자 필요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록 (GST registration of an agent or representative)	GST 등록인을 대신하여 모든 과세대상활동을 책임지는 경우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록 의무

□ GST 과세 기간

과세기간	가이드라인
2개월	가장 표준적인 과세기간 · 1,3,5,7,9,11월의 마지막 날 또는 · 2,4,6,8,10,12월의 마지막 날을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로 설정 가능
1개월	매달 GST 신고 · 예를 들어 수출업자와 같이 규칙적인 세무신고를 원하거나 · 짧은 주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때
6개월	· 작은 규모의 업체만 선택 가능 · 과세기간이 끝나는 달 선택 가능 · 매출액이 50만 달러 초과 시 다음과 같은 때에는 6개월 단위 선택가능 - 과거 적시에 정확한 신고를 해온 경우 - GST 기록이 a satisfactory level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매출액이 계절변동성이 큰 경우

- 일반적으로 과세 기간은 해당 월의 1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에 종료
- 과세 기간 종료일 일주일 전후로 결제 예정된 경우 결제일을 과세 기간 종료일로 신청가능

- 대규모 시설이나 자본자산 판매로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기준액(50만 달러)을 초과할 때에는 과세 기간 변경이 요구되지 않음

□ **사용목적변경에 따른 GST 조정**

- 실제 재화와 용역 소비와 매입세액(Input tax) 분배를 일치시키려는 새로운 사용목적변경(change-in-use) 규칙 도입
- 구매 시 의도와 달리 실제 과세 대상에 속하는 재화와 용역의 이용비율이 달라지면 조정기간 내에 GST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함
 - ‘조정 기간(adjustment periods)’이라 불리는 특수기간은 자산의 가치와 예상되는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
 - apportionments rules의 적용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이 판매되거나 GST 등록인이 등록 해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Wash-up’ 규칙적용
- GST 등록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목적에 따라 GST조정을 계속 하여야 함
 - 2011년 4월 1일 이전에 획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는 기존 조정 규칙 적용
 - 2011년 4월 1일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시장가치나 장부가액에 따라 조정종료일 결정

2011년 4월 1일 기준 시장가치 또는 장부가액	조정종료일
5천달러 이하	2011년 4월 1일
5천달러 초과 1만 달러 이하	2013년 4월 1일
1만 달러 초과	2016년 4월 1일

- 과세대상사용과 비과세대상 사용을 구분하여 매입세액 배분
 - 2011년 4월 1일 이후 구매한 재화와 용역은 과세대상공급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할 때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과세대상인 사용에 사용되는지 즉, 사용목적 판단은 이전의 기록, 경험, 사업 계획이나 다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

-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됨
 - 비과세대상에 재화나 용역이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조정이 이루어짐
 - 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때 GST액을 계산
 - ② 과세대상공급에 사용되는 재화의 범위를 설정
 - ③ 비과세대상에 사용되는 비중만큼 GST를 납세의무자가 부담

◆ 예시

20만 달러의 4층 건물 구입하여 1층은 쇼핑센터 목적으로 임대해주어 과세대상이 되고, 남은 3층 공간은 주거목적으로 임대해주어 비과세대상인 경우를 가정한다.

1.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때 GST는 3만달러(20만달러*15%)이다.
2. 과세대상공급은 건물의 25%를 차지한다.
3. 납세의무자는 비과세대상인 건물사용부분의 GST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세액의 크기는 2.25만 달러(3만달러*75%)이다.

출처 : <http://www.ird.govt.nz>

- 자산은 과세대상인 사용목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사용목적변경(change-in-use)시 GST 조정이 필요
 - 첫 번째 조정기간은 재화 획득일로부터 시작하며 납세의무자의 다음 결산일 또는 자산획득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내의 첫 결제일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날이 마감일
 - 그 다음 조정기간은 결산일 변경이 없는 한 회계연도와 일치
 - 자산의 가격에 따라 조정기간의 길이가 결정
 - 5천달러초과 1만달러 이하 : 2번의 조정기간
 - 1만달러 초과 5십만달러 이하 : 5번의 조정기간
 - 5십만달러 초과 : 10번의 조정기간

- ※ 토지와 관련해서는 조정기간의 한도가 없음
- ①5천만 달러 이하의 자산이나 비과세대상공급과 과세대상공급이 동시에 제공될 때 ②비과세대상공급의 가치가 9만 달러미만이거나 ③총 공급액의 5% 미만인 경우 조정이 필요 없음
- 계획과 실제 사용의 차이가 10%포인트 미만이거나 계산된 조정가치가 1000 달러 미만인 경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 과세대상공급에 65%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실제 75%가 사용된 경우 사용목적변경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
- 사용목적변경에 따른 조정액의 크기는
총 매입세액 공제액×(실제 사용 비율 - 계획된 사용의 비율)
- 자산 매각 시 GST조정금액을 차감한 만큼 GST를 납부하여야 함

◆ GST 조정금액

$$GST\text{조정금액} = \text{세율} \times \text{재판매가격} \times \left(1 - \frac{\text{공제받은매입세액}}{\text{총매입세액}}\right)$$

※ 세율×재판매가격=매각금액의 GST

$$\left(1 - \frac{\text{공제받은매입세액}}{\text{총매입세액}}\right) = \text{비사업용도비율}$$

2. 영세율과 면세제도

□ 면세제도(Exempt supplies)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GST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 ① 비영리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 재화와 용역 공급에 사용된 비용 또한 공제받을 수 없음
 - ② 금융서비스

- 이자비용 지불
- 모기지나 기타 대출
- 은행 수수료
- 유가증권
- 신용거래
- 환전서비스
- 위와 같은 금융서비스 중개
- 금융옵션
- 선물계약 등
- 재무계획 수수료는 재무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 일체를 포함하는데 일부만 면세대상
 - 초기 계획수립 수수료, 모니터링 수수료, 평가 수수료 및 재계획수립 수수료는 GST 납부 대상이지만
 - 실행수수료, 행정수수료 및 전환 수수료는 면세대상

③ 주거목적 주택임대

- 임대인과 임대회사는 유지비용, 보험 등 주거비용의 GST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음
- 과세대상공급의 일부로 주택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이전 최소5년간 임대 사용되었다면, 이 때 주택판매는 면세대상이 됨
- 과세대상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부동산을 획득한 후, 실제 임대 사용하게 되면 사용목적 조정이 필요

④ 핵심 임차인이 운영하는 주거목적 숙박시설

- 핵심 임차인이 임대인과 함께 임대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방식의 임대는 다세대 주거시설에서 주로 나타남
- 핵심 임차인이 있는 주거시설은 면세대상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됨
 -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에 계약하고
 -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이전 공급이 과세대상이었던 경우

⑤ 금속(Fine metal) 공급

- 금속 판매나 수입은 면세대상
 - 순도 99.5% 이상의 금
 - 순도 99.9% 이상의 은
 - 순도 99%이상의 백금
- 단, 정제회사가 투자아이템으로써 딜러에게 새롭게 재정제된 금속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음

⑥ 지연이자

- 기한경과계정에 부과되는 이자는 면세

□ 영세율(Zero-rated supplies)

- 일부과세대상공급은 15%가 아닌 0%의 세율 적용을 받음

① 면세품(Duty-free goods)

- 해외 여행객이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한 판매자에게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음
 -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판매된 재화는 해외에서 사용하기로 약정
 -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에서 보내기로 약정
 - 출국 시 여행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재화를 보내기로 약정
- 뉴질랜드로 입국 시 과세와는 별개로 국제공항 내 면세점에 구입 당시에는 영세율 적용

② 수출 재화

- 수출 재화는 영세율의 대상
- 1000달러 이하의 통관항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재화 또한 수출용임을 입증하면 영세율 적용
- 뉴질랜드 밖에서 사용될 비행기와 배에 공급되는 상품도 포함
- 수출통관을 받은 재화는 연장신청 없이 공급시기 28일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수출되었으나 공급자와 수신자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으로 수출 재화가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세율

③ 특정 수출 용역

- 건축, 부동산, 법률서비스 등 뉴질랜드 밖에 있는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용역 공급
- 용역 제공 시 뉴질랜드 밖에 위치한 재화와 관련한 용역 공급
- 용역 제공 시 뉴질랜드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
- 이동 가능한 개인적 자산과 관련된 정보 제공 용역
- 수출 재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
- 뉴질랜드 밖에서 적용될 지적재산권, 특허권과 관련된 용역
- 뉴질랜드 밖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와 계약한 용역
 - ※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제3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불가

④ 수출 선박

- 자력으로 뉴질랜드에서 수출될 수 있는 선박은 영세율 적용 가능

⑤ 특정 금융 서비스

- 금융중개서비스는 수신자가 GST등록자이고, 12개월 내 용역의 75% 이상이 과세가능대상에 공급된 경우 영세율 대상이 됨
- 신탁예탁중개와 위탁매매 서비스 등의 금융중개서비스가 있음
- 이외 기타 수신자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때에는 면세 적용을 받으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⑥ 해외에 기반을 둔 유람선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 해외에 기반을 둔 유람선의 운행안전을 위해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음
- 이는 뉴질랜드 관세청의 일시적 허가 아래 뉴질랜드에 선박해 있는 유람선에도 적용
- 뉴질랜드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에 뉴질랜드 밖에서 소비할 소비품들은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 대상인 소비품에 연료와 윤활유는 포함되지만 예비부품과 장비는 미포함

⑦ 생활용품 국내 운송

- 2003년 11월 25일 이후 생활용품 운송은 다음과 같은 때 영세율 적용
 - 운송되는 당시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수행하며
 - 운송될 재화가 Customs and Excise Act 1996하에서 국내소비를 위해 반입된 것이고
 - 용역계약이 재화수입이전에 체결되었으며
 - 재화 수입 후 28일 내에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⑧ 특정 수입 용역

- 용역 수입 시에도 GST 납부 또는 환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 일부 용역은 뉴질랜드 밖에서 수행되고 용역이 실제 수행되는 장소와 시간에서만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있다면 영세율
- 무형자산은 제외

⑨ 인터넷 판매

- 뉴질랜드 내 고객에게 판매 시에는 15%세율이 적용되고 해외고객에서 판매 시 0% 세율 적용

⑩ 제련된 고급 금속 첫 판매

- 새롭게 제련된 고급 금속(금, 은, 백금)이 제련회사에서 달러로 처음 판매될 때는 영세율 적용

⑪ 계속 기업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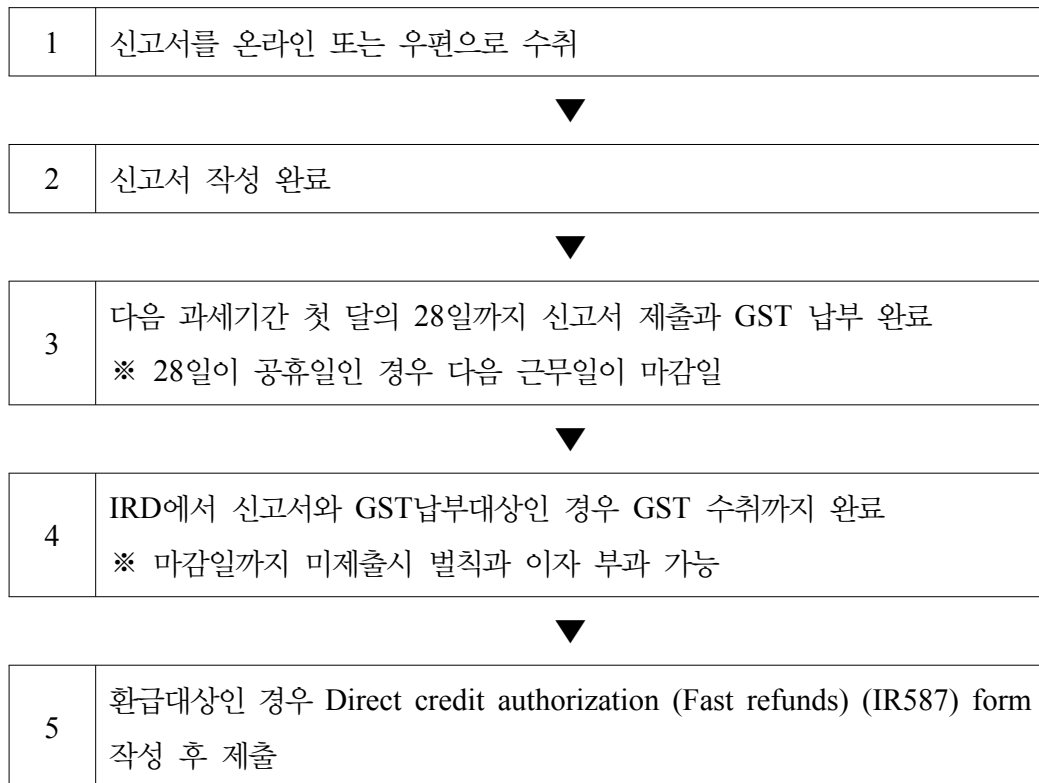
- 과세가능활동의 전체 또는 독립된 부분이 GST 등록자에서 다른 등록자에게 판매
- 과세가능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 필수적이고
- 거래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속 기업을 동의하며

- 기업인수자가 과세가능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것이며
 - 기업인수와 동시에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 계속 기업 판매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가능활동 부분만 계속기업으로 판매될 때에도 동일
- ⑫ 해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 ⑬ 일시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와 용역
- 주로 유지와 보수와 같은 용역이 이에 해당
 - 일시수입 재화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또한 수입품의 일부가 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일시수입 재화 수선에 사용된 후 쓸모가 없어진 때에도 영세율 적용
 - 일시수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일시수입 증서본을 보관하여야 함
- ⑭ 뉴질랜드 내 또는 밖으로 운송
- 해외배송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 운송은 영세율 대상이며 동일한 개인이나 단체에 해외배송을 위해 이루어지는 뉴질랜드 내 운송 또한 영세율 적용
 - 해외배송과 관련한 보험거래와 운송수단 거래는 영세율 대상
- ⑮ 뉴질랜드 내 또는 밖으로 승객 수송
- 해외 수송과 해외수송과 관련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
 - 국내수송이 해외수송의 일부를 차지하고 해외수송과 동시에 동일한 공급자에게 계약한 경우 이 때 국내수송 또한 영세율 대상
- ⑯ 토지거래
- 토지거래가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GST 등록인과의 거래이어야 하며
 - 토지매수인은 향후 과세대상공급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할 것이고
 - 토지매수인과 관련인이 토지이용의 주된 목적을 거주로 하지 않는 경우
 - 토지 거래 대금 결제일에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15%의 세율

로 과세됨

3. GST 신고납부

GST 세무신고(GST Return) 단계



GST 등록방법

- GST에 등록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필요
 - ① IRD 번호가 필요하며 IRD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 개인사업자는 IR595
 - 새로운 동업기업, 회사, 비영리기관, 신탁 등 단체는 IR596
 - ② BIC(business industry classification)코드 필요

- www.businessdescription.co.nz에서 코드 검색 가능

③ 회계기준 선택

④ 과세기간 선택

○ 매출액과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준 선택 가능

- 매출액 기준에 따른 선택 가능 회계기준

12개월의 매출액	선택 가능한 회계기준
2백만 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회수기준(payment basis) · 송장기준(invoice basis) · 하이브리드 기준(hybrid basis)
2백만 달러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장기준(invoice basis) · 하이브리드 기준(hybrid basis) <p>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현금회수기준(payment basis) 선택가능 · 과세대상공급의 가치와 양, 기존의 사용하던 회계기준의 종류를 고려해 현금회수기준(payment basis) 허용 가능

- 각 회계기준의 특성

현금회수기준(payment basis)		
운영방식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거래발생시 납부의무 발생 · 송장기준과 달리 과세기간이 끝날 때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출내역 보고 의무를 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사업체 운영시 특히, 현금흐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적합 ·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긴 신용기간을 주는 경우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현금 지불한 후에 지출액에 대한 GST 환급 요구가능

송장기준(invoice basis)		
운영방식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장이나 현금 거래 중 먼저 일어난 사건기준으로 GST 납부 또는 환급요구 · 발생주의 회계와 유사하여 과세기간이 끝날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 조정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용품을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현금지급 이전에 GST 환급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로부터 현금받기 이전에 GST 납부 의무 부담 · 현금출납부에 없는거래 기록을 별개로 보존할 의무 부담

하이브리드기준(hybrid basis)		
운영방식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하는 경우 현금회수기준과 동일하게 현금 지급 시 GST 요구 가능 · 판매하는 경우 송장기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를 위한 조정이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출납부에 없는 채무자 거래 기록을 별개로 보존할 의무 부담

□ GST 세무신고 작성

- GST 세무신고는 크게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로 구분
 - 기본적으로 IRD가 과세기간 마지막 주에 세무신고서를 발송하며 GST 등록인은 다음 과세기간 첫 달의 28일까지 세무신고서를 제출
 - ※ 세무신고는 myIR Secure Online Services를 통해 대리인에게 위임가능
 - myIR 통해 온라인으로 세무신고 가능하며 한 번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IRD에서 더 이상 서면 신고서를 발송하지 않음
 - 온라인 또는 서면 세무 신고시 등록자이름, 회사명, IRD/GST 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ratio percentage(if applicable), 과세기간가 포함되어야 함
- 온라인 세무신고의 장점
 - 신고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개인상황에 맞도록 조정됨
 - 한 번에 신고서작성을 완료할 필요는 없이 임시저장 가능
 -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주어 더 정확하고 쉽게 작성 가능
 - 최종제출 전에 수정가능
 - 세무신고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접수 확인할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출력 가능
 - 세무신고 처리과정 확인 가능
- 서면 세무신고의 유의점
 - 신고서 표지에는 GST 번호, GST 세무신고 되어야 할 기간 , 우편주소, 주간 연락처, DLN(document lodgement number)가 있으며

- 세무신고 작성이 잘못된 경우에 대비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 IRD기록과 세무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면 세무신고 처리가 지연되며 유선 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침

□ GST 세무신고 책임자

○ GST 세무신고 작성을 책임질 담당자는 등록인 유형에 따라 결정

등록인 유형	최종 책임자
1인 기업	사업 소유자
동업	동업자
신탁	신탁 관리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	이사 또는 법정 입원
국책회사	권한 있는 자
비법인기업	집행위원회 위원
합작회사	합작회사 구성원
부동산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고위공직자

- GST 세무신고를 제출한 담당인은 수령증에 서명하고 출력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함

□ GST 환급금 지급

○ GST 환급 절차

- 세무신고 시 GST 납부액 보다 GST 환급액이 더 큰 경우 GST 환급액에서 GST 납부액을 차감한 만큼 등록인은 환급받음
-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계좌로 환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표로 지급
 - ※ 환급액이 5달러미만일 때는 수표발급불가하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환급

- ※ 환급을 보류하거나 세무신고서를 조사하기 결정한 경우에는 15일 내에 환급이 어려움
-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은 ①세무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②myIR계좌와 은행계좌변경권한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③ myIR에서 'Secure mail' 을 이용해 메일전송

5 | 국제조세

1. 이전가격세제

가. 이전가격 법안 및 지침의 연혁

이전가격 법안의 연혁

- 1995년 12월 12일 새로운 이전 가격 법안 제정
- 2000년 10월 최종 형태의 이전 가격 가이드 라인을 발표

이전가격에 대한 뉴질랜드 국세청 지침 연혁

- 국세청의 초기 지침은 두 파트로 구성
 - 첫 번째 파트는 1997년 10월 발표, 두 번째 파트는 2000년 1월 발표
- 2004소득세법의 2007년 재개정 이후 추가적 후속지침 없는 상태

나.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

법률 규정

- 200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에 이전가격 규정 명시
- 뉴질랜드의 이전가격 규정은 OECD 가이드 라인과 미국의 Section 482 규칙을 준수

□ 이전가격의 결정

- 뉴질랜드 국세청은 OECD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이전가격 측정의 방법으로 다음을 인정
 -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 원가 가산법(cost plus)
 - 이익 분할법(profit split)
 - 이익 분할과 유사한 이익 방법(comparable profits methods)
- 다섯 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은 세액을 늘리는 측면에서만 인정
- 납세자의 비협조가 명시되지 않는 한, 신뢰할 만한 대체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의 감독관이 지게 됨
- 지점과 에이전시의 경우 뉴질랜드와 다른 나라간의 소득배분에 이전가격 측정 방법 사용을 규정

□ 이전가격에 적용에 대한 국세청 지침

- Part one - 1997년 10월 발표
 - 중립적 거래원칙, 이전가격 방법론, 이론 및 실제적 고려, 비교원리, 중립적 거래원칙의 실질적 적용, 뉴질랜드 이전가격 규칙을 관리하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접근 방식 명시
- Part two - 2000년 1월 발표
 - 그룹 간 서비스 조치, 무형재산과 기부조정비용에 대한 조치 명시
- 국세청 지침은 영구적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뉴질랜드 국세청의 지침은 호주 국세청의 지침 및 미국 482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더 중립적인 측정방안이라 신뢰 할 수 있다 결정하는 경우 외국의 규정 적용 가능

□ 이전가격 합의 내용에 대한 문서화

- 이전가격에 대한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2007소득세법에 규정된 방법들 중 하나이상을 설정할 것을 요구
 - 서류 미비 시 국세청은 이전가격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며, 국세청의 검토결과 새로운 이전가격이 설정되면 납세자는 반박에 불리
 - 또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국세청 지침에 의해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20%~40%의 가산세 부과
- 최소권장 문서내용
 - 이전가격이 적용되는 국제적 거래의 증빙
 - 주요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납세자의 분석
 - 자세한 이전가격 분석을 착수, 문서화 하지 않은것에 대한 위험분석
 - 이전가격규칙 준수비용 추정

다. 이전가격의 증명

□ 납세자의 일반적 증빙의무와 위원의 예외적 증빙의무

-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증빙의무 부담
- 예외적인 경우 이전가격 결정시 증빙의무를 위원에게 부여

□ 위원에게 부여되는 증빙의무

- 결정가격이 더 신뢰할만하며, 납세자와 협력관계가 없음을 위원이 증명
- 협력여부 판별기준은
 - 납세자가 위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 납세자가 국세청이 요구한 서류를 준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라. 이전가격 세무 감사

□ 감사 절차

- 국세청은 일반세무조사와 결합하여 이전가격 심사 실시

□ 이전가격 감사 대상 기업 선택 기준

- 기본적으로 상황 및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
 - 이전에 세무당국과 이전가격 분쟁이 있던 경우
 - 해외에서 세무당국에 정보가 전해진 경우
 -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국세청의 위험평가

□ 감사 영역

- 감사대상 거래에 대해 2007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에 명시
 - 고정금리 우선주에 관계되는 이자, 관리비용, 로열티 및 기타비용
 - 고정금리 우선주 이외의 주식자본에 대해서는 제외
- 2010-2011 준수검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개 산업에 초점
 - IT, 제약, 에너지, 은행 및 보험업 등 이전가격영역에서 위험도가 높은 영역

□ 납세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협조의무

- 세무당국의 조사요청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은 Tax Administration act Section 16, 17, 17A, 18, 19, 21에 명시
 - 조사 및 정보 제공 요청 시 국세청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Section 16, 17)
 - 해외 정보에 대한 요청권한 부여(Section 21)
- 납세자는 '세무 자문 문서'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이 발표한 SPS(Standard Practice Statement) 05/07에 의해 이전가격 보고서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 가산세 및 벌금

- ↳ 법인세법 동일 파트 참고 (p.29~33)
- 벌금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협력정도에 따라 조정가능
- 세금납기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자비용 계산

마. 이전가격 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전가격승인제도를 인정

- 공식적인 APA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비공식절차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기틀 하에서 APA 프로그램을 설립
- APA에 대한 유연한 접근방식을 통해 APA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 유연한 접근방식은 대부분 APA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될 수 있음을 의미

□ 뉴질랜드 APA 체결 현황

- 2001년 최초의 양자 APA를 호주와 체결
- 그 이후로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과 양자 APA 체결
- 뉴질랜드 국세청은 50개 이상의 다자간 APA를 체결했으며 그 이상의 국가와 협상 중

□ 이전가격협정에 대한 뉴질랜드 국세청의 기대

- 많은 납세자가 APA를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특히 호주와의 APA를 권장
- 납세자들이 잠재적인 이전가격 감사로 인한 위험부담을 지는 것보다 APA를 체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예측

나. 이전가격에 대한 국세청(The Inland Revenue)의 현재 쟁점

□ 이전가격 검토 프로그램 추진

- 외국소유 다국적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연간 검토 실시
- 2010년 7월, 2010-2011 거래에 대해 다음부분에 중점을 두는 검토프로그램을 발표
 - 비 시장 가격을 통한 해외 손실
 - 복합 금융 상품 가격
 - 1000만 뉴질랜드 달러(NZD)를 초과하는 모든 금융 계약
 - 평균 이상의 부채를 지니며 손실과 자산 상각에 노출된 그룹
 - 비중립적 거래 보조금

□ 기업 감시체계 확대

- 10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인바운드 대출과 모든 아웃바운드 대출, 그리고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 기업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한 판례를 검토할 것을 제안
- 납세자가 사전에 가격 계약을 체결 할 것을 권장
 - 사전계약을 통해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 설문조사의 적극 활용

-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전가격 규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도구
- 세 가지 형태의 설문조사: 외국 다국적 기업, 뉴질랜드 소유의 다국적 기업, 뉴질랜드 지부
- 일반 세무조사시 이전가격 위험 검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문조사 실시
- 잠재적 이전가격 문제를 지닌 납세자에 대해 세무 조사 시 설문지 제공

- 설문결과에 따라 납세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음조사에 반영하거나, 재무성과를 모니터링

2.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세제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 과소자본세제란 과소자본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 정책
 - 과소자본 기업이란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 많아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함

□ 뉴질랜드는 1996-97 소득연도부터 과소자본세제 도입

- 뉴질랜드 운영기업의 부채에 비거주자의 비중이 과도한 경우 이자공제를 거부하도록 설계
- 기업의 부채비율(총부채/총 그룹 자산)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이익 배분이 이루어짐
 - 75% 이상 그리고
 - 전 세계적 그룹의 부채비율이 110% 이상일 것
- 잠재적 적용대상
 - 뉴질랜드에서 원천소득을 얻는 비거주자
 - 한명의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뉴질랜드 기업
 - 비거주자에 의해 50%이상 형성된 부적격 신탁

□ 뉴질랜드는 과소자본세제를 2009년 확대

- 뉴질랜드 거주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뉴질랜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기업(CFC : Controlled Foreign Companies)까지 적용대상
- 과소자본세제 적용제외 대상

- 총 그룹 자산대비 뉴질랜드 그룹자산비율이 90%이상인 경우
- 뉴질랜드 그룹의 이자공제가 NZD 250,000 미만이며 CFC의 소속국가로부터 파생된 임대소득에 이익을 지니지 않은 경우

□ 은행 그룹의 자본 기준 강화

- 2012년 10월 세율 및 신고 등에 관한 세법 개정
- 외국계 은행에 대한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여, 뉴질랜드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4%에서 6%로 인상함

3.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 CFCs(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s

- 뉴질랜드 납세의무자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회사(CFC)의 특정이익에 대해 실제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뉴질랜드 지배회사에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는 규정
- 다음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 시 CFC에 해당
 - 5명이하의 뉴질랜드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50%를 지배하거나,
 - 한명의 뉴질랜드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40%이상을 직접 or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규정에 의해 CFC로부터 10%가 넘는 이자소득을 얻는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호주예외규정이 적용되거나 CFC가 적극적 기업테스트(active business test)를 통과할 경우 귀속시키지 않음
 - 귀속소득이 총 소득의 5%미만인 경우 적극적 기업테스트 통과
- 귀속소득의 종류
 - 뉴질랜드 거주기업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
 -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성과소득

- 해외 보험사업과 생명보험정책에 의한 소득
- 개인적 서비스 소득
-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연계된 소득
-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소득

□ FIFs(Foreign investment funds) rules

- CFC외의 외국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실제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뉴질랜드 거주 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는 규정
- 뉴질랜드 세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회사, 신탁, 외국 연금, 생명보험 등의 투자에 대해 적용
- FIF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
 - 포트폴리오 FIF 규정 : FIF에서 10%미만의 이자에 대해 적용
 - 비포트폴리오 FIF 규정 : 10%가 넘는 이자 중 CFC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적용

4.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

□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의의 및 현황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사업을 할 때 외국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
- 뉴질랜드는 한국, 인도, 스페인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으며, 홍콩, 터키 와 새로운 협상 중

□ 뉴질랜드와 한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

- 한국과 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81. 10. 6 서울에서 서명되어 1983. 4. 22 발효됨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
- 협정의 대상은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며 뉴질랜드에 있어서는 소득세, 초과유보세였으며 서명일 이후 대체되는 조세에 대해서도 유효함
- 양국은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하기로 합의

□ 뉴질랜드와 타 국가와의 이중과세 협정

- 2010년 8월 13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정 발표
 - 배당 및 이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개정
 -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고 양보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 간의 지급이자 방침 개정
 - 뉴질랜드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에 대해, 2011년 4월 1일부터 그 외 세금에 대해 적용되며 싱가포르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 뉴질랜드-미국 DTA의 개정은 2008년 12월 1일에 서명되었고 2010년 11월 13일부터 발효
 -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

6 | 전자상거래와 조세

□ 전자상거래와 소득세

- 전자 상거래 기업 중 뉴질랜드 거주기업으로 보는 기준
 - 뉴질랜드에서 법인을 설립
 - 본사가 뉴질랜드에 위치

- 법인의 핵심적 경영활동을 뉴질랜드에서 수행
 - 임원들이 주요 법인 관리와 통제를 뉴질랜드에서 행사
(임원들의 결정이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지와 무관)
 -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나 웹사이트의 주소가 외국에 기반 하는 경우 이중과세(DTA)의 문제 발생
 - DTA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 전 세계적 소득은 뉴질랜드 소득으로 인정되나 해외국가에 지불한 세금은 뉴질랜드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인정되어 공제
 - DTA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경우,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 납부는 인정되어 공제
 - 뉴질랜드는 OECD 가입에 따라 OECD 기준을 적용
 - OECD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조약 이슈에 대한 Technical Advisory Group report to Working Party No 1을 2001년 2월 발표
 - 이 보고서에 영업이익과 사용료에 대해 구분
 - 원천징수세가 국경을 넘어 적용 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소프트웨어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리방안 명시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급 중 뉴질랜드 소득세가 부가되는 경우
 - 저작권 있는 문서의 판매, 복사본, 저작권 권리의 판매는 뉴질랜드 소득세 면세
 - 저작권 면허의 판매, 노하우 제공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15%과세(DTA에 의하면 10%)
 - 프로그램 대여는 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체험판의 제공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만 과세대상
-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GST)
- 디지털 상품의 판매와 GST
 - GST 등록자가 뉴질랜드 거주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전자책 등을 판매나 다운로드 하는 경우 GST는 15%과세

- 해외 거주 고객에게 팔리거나 다운로드 될 경우 영세율 적용
- 해외배송상품과 GST
 - 뉴질랜드로 발송되는 상품은 GST의 대상이 되며 GST는 우편 및 보험료를 포함한 상품 값을 바탕으로 계산
 - 재화를 소비할 구매자가 GST 지불
- 중고품과 GST
 -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중고품 구입을 주장하며 공급업체의 이름, 주소, 구입날짜, 수량, 지불가격에 대한 서류 구비 시 구매가격의 23분의 3에 해당하는 GST 환급
 - 구매자의 경우 구입가격에 GST 포함
 - 해외 거주 구매자의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판매자는 GST 회계처리 불필요
-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과 GST
 -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GST의 대상
 -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이 수입되는 경우 GST가 구매자 부담

7 | 기타세제

- 부가급부세(FBT: Fringe benefit tax)
 -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근로자의 부가소득으로 보고 부가급부세를 부과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자동차, 저리 또는 무상대여금, 보조금, 염가로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
 -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가급부를 단순 비용처리하고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 부가급부세의 면세한도는 고용인 1인당 연간 NZD12000, 고용주 단위당 연간

NZD22500

- 부가급부세는 다음의 세 방법 중 하나로 계산되며,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Single rate: 49.25%의 단일 세율 적용
 - Short alternate rate
 - 한명의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경우(Attributed): 49.24%
 - 여러 명의 고용인에게 공유되는 경우(Non-Attributed): 42.86%
 - Alternate rate : 각 근로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결정됨

(단위: NZD, %)

보수	FBT rate (%)
12,530 이하	11.73
12,531~40,580	21.21
40,580~55980	42.86
55,980 이상	49.25

□ 키위세이버(KiwiSaver)

- 키위세이버는 자발적 형태로 운영되는 근로 대상 저축제도
 - 세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보완위해 고안됨
 - 의무 가입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
 - 키위세이버에 저축한 돈은 운용 전문 업체에 의해 투자됨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혜택
 - 정부가 가입과 동시에 본인 계좌에 NSD 1,000 선불 입금
 - 회원이 고용인인 경우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3%*까지 저축 장려금 받음
 - *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용인과 고용주의 최소기여분이 세전급여의 2%에서 3%로 인상 됨
- 2012년 4월부터 고용주 기여분에 대한 면세혜택 폐지하고,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세(ESCT: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부과

- 급여구간에 따라 상이한 세율 적용

(단위: NZD, %)

급여구간	ESTC rate (%)
16,800 이하	10.5
16,801~57,000	17.5
57,601~84,000	30
84,001 이상	33

- 키위세이버 가입 방법
 - 새로 일을 시작할 경우 대부분 자동적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됨
 - 자동적으로 가입후 8주 이내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 고용 상태와 상관없이 키위세이버 저축제도에 가입하려면 운용전문업체 선정 후 신청서 직접 작성하여 가입
- 뉴질랜드 노후 연금 대상 미만 연령(현 65세)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키위세이버로 저축한 금액은 노후연금대상 혜택시점(현 65세)부터 인출 가능

□ 특별소비세 (excise duty)

- 뉴질랜드 내에서 소비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소비 지출 억제 및 국고수입증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 연료, 담배, 술 등에 과세됨
-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국가로 만들기 위한 담배 특별소비세 인상을 진행 중
 -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안은 앞으로 4년 동안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매년 10%로씩 인상하기로 함
 - 현재 뉴질랜드 담배값은 OECD 국가 들 중 가장 비싸 한 갑에 한화로 2만원 정도

- 주류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부과되며, 담배만큼 과중한 세금은 아니나 최근 주류판매법(Sale of Liquor Act, 1989) 개정에서 위원회는 술에 관한 세금을 50%로 높이도록 권고

□ 부동산 관련 조세

- 인지세 규정은 1999년 폐지되어, 1999년 5월 20일부터 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음
-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음
 -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
 - 일부에서는 뉴질랜드인들의 투자형태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만큼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통해 투자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2011년 총선에서 뉴질랜드 야당인 노동당은 승리할 경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공약 내세움
- 주택 구입 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 납부
- 중앙정부에는 재산세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보유가액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재산세 과세
 - 서울과 과세 가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됨

□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는 폐지되어 1992년 12월 18일 이후로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음
- 증여세는 201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됨
 - 증여세 관련법에는 연 \$27,000 이상 증여시에만 과세하게 되어있어 작은 금액으로 쪼개어 증여가 많이 일어남
 - 트러스트에 자산을 팔되 동시에 대출을 일으켜 편법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연간 면세 한도를 지키는 사례도 등장

- 증여세 폐지 배경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비효율성을 언급
 - 증여세 부분에서 연간 약 백만 달러의 세수밖에 거두지 못했으나, 행정비용으로 43만 달러가 소요
 - 개인들도 증여세 회피위한 관련 처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 소요
- 증여세의 폐지가 ‘증여’라는 행위의 모든 법적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 증여자는 증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반드시 준비
 - 국세청의 증여명세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여증서와 부동산명의 이전기록, 차량등록증, 입금증과 같은 증명서류들을 별도 보관

□ 관세

- 관세는 재화가 뉴질랜드로 반입될 때 과세되며, 세율은 재화의 형태 및 국가에 따라서 다양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물건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관세 부과
 - 관세 부과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의류(10%), 신발(10%), 세탁기(5%), 식기세척기(5%), 식품(5%), 화장품(5%) 등이 있음

8

주요 개정 사항 정리

□ 2009년 세법개정내용

-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해외소득 면세
 - 해외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에 대해 면세
- 급여기부제도 도입

- 종업원이 급여에서 일정금액 기부하는 'payroll giving scheme'
- 기부금액의 33.3%에 대해 세액공제

□ 2010년 세법개정내용

- 12.5~38%에서 10.5~33%로 개인소득세율 인하
-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가급여세율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인하
- 30%이던 법인세율은 28%로 인하
- 세법상 적용하는 새로운 감가상각률 제시
 -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산·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의 건물구조물에 대한 정액 감가상각 불허
 - ※ 사용연수 50년 이상인 건물에 대해 연간 0%의 감가상각률 적용
- 12.5%이던 GST세율을 15%로 인상

□ 2011년 세법개정내용

- 증여세의 폐지와 이에 따른 증여계산서 신고규정 폐지
- 포트폴리오 투자체(portfolio investment entities, PIEs)에 대한 세법규정에 외국 투자 영세율 PIEs와 외국투자 변동률 PIEs 도입

□ 2012년 세법개정내용

- 'IR3 소득세 신고서'와 '개인소득세 요약' 서식을 개인별 소득세 신고서로 통합하여 신고절차 간소화
- 수익분배 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은 비과세였으나 다른 배당재투자 계획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
- 키워세이버 최소 납입금 기준을 근로소득의 2%에서 3%로 인상

□ 분쟁해결 절차 내용

- 국세청의 평가나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 진행가능
- 2010년 4월 1일 적시성과 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 강화
- 단계별 절차

단계	과정	구체적인 절차
1	NOPA(notice of proposed adjustment) 보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T 환급 후(평가에 의한 경우라면 평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NOPA를 보내야 함 ○ 포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항목에 대한 세부설명 -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법 - 변경을 요구한 배경 - 변경으로 인한 법적 이슈 - 법적 제안
	결과(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동의시-납세자의 주장에 따른 조정 ○ 국세청 비동의시-2단계로 진행
2	응답 공지(notice of response)	국세청은 NOPA를 받고 2개월 내에 거부사유와 조정 가능정도를 공지
	결과(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동의시: 기존조정에서 완료 ○ 납세자 비동의시: 통지 후 2달 이내에 불복을 알리고 3단계로 진행
3	회의	전화나 대면으로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 사실과 쟁점을 명확히 함
	결과(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도달시: 합의 반영하여 조정 ○ 합의미도달시: 4단계로 진행
4	공개통지(disclosure notice)	국세청은 공개통지로 납세자가 분쟁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
5	납세자 진술서 작성	공개통지후 2개월 이내에 사실과 증거에 대한 개요와 근거 법률과 쟁점을 제시 제시된 이후에는 증거배제의 원칙(evidence exclusion rule)에 의해 다른 주장 불가

단계	과정	구체적인 절차
6	국세청 진술서 작성	납세자 진술서 작성 후 2개월 이내에 국세청 진술서 작성 이 단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판결단위로 이동
7	판결	국세청 내의 독립적 전문가인 평가위원은 증거, 법원 칙, 진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결정문을 납세자와 관계직원에게 송부 ○ 납세자 주장 인정시-국세청이 재조정하고 종결 ○ 국세청 주장 인정시-납세자가 인정하면 종결, 인정 못하면 8단계로 이동
8	과세검토키관(Taxation Review Authority)이나 고등법원에 항소	평가위원의 결정 후 두달 이내에 항소장 제출

출처 : <http://www.ird.govt.nz>

□ 추가사항

- 모든 절차에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것을 요구
 - 예외적으로 납세자나 대리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연기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음
- 감사나 조사에 대한 불복인 경우 모든 서류를 감사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송부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송부

제 3 장 기타 뉴질랜드 정보

1. 뉴질랜드 국가 정보
2. 뉴질랜드 비즈니스 정보
3. 뉴질랜드 생활정보

1

뉴질랜드 국가 정보

□ 뉴질랜드의 산업

○ 뉴질랜드 산업 구조의 특성

-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목축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 낙농 국가
 -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5%가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림면적은 전 국토의 28%, 수산업은 1978년에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 목축업 이외에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주류
 - 양고기, 소고기, 양모, 낙농 제품 및 가죽 등을 생산하여,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에서도 50% 이상을 차지
 - 뉴질랜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보조금이 없이도 강한 농업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
-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하며, GDP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취약

○ 주요 산업 정책

- 농업과 축산업 등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농림부(MAF)로 1998.3.1. 뉴질랜드 농업부와 임업부가 통합
- 농업 등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 제조업은 적은 인구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어려움
- 중공업이나 경공업 등의 제조업을 육성하기보다 생명공학, 정보통신, 영화분야 등 환경훼손이 적고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교통

- 뉴질랜드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구불한 지형과 널리 분포된 인구 및 총 길이가 2,011km나 되는 남북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운송분야 발달

- 항공과 공항으로 연결되는 약 93,000km의 통합도로망과 4,200km의 철로가 건설되어 있음
- 대외교역의 약 90%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중 상당량을 30여개의 외국회사가 맡음
- 항만개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항만기술 도입을 통해 각종 비용을 낮춤

○ 관광

- 연간 200만 명이상 관광객이 몰려들어 GDP 기여율이 직간접적으로 10%에 달하는 뉴질랜드의 주요 성장산업
-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 즐길 수 있는 야외 레포츠 등이 뉴질랜드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일조

○ 낙농업

-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의 98%는 협동조합이자 세계 5위의 낙농 카르텔을 형성하는 폰테라를 통해 판매 및 수출
- 주요 낙농제품으로 분유, 치즈, 버터, 식품원료 등을 들 수 있으며 대규모 가공시설과 결합한 효율적인 목축 시스템,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의 투자, 혁신적인 마케팅을 자랑함
- 유제품 수출비용은 전 세계 유제품 교역량의 30%에 이르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막강

○ 임업

- 국토의 약 30%(810만Ha)의 광활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이중 640만Ha는 천연림, 170만Ha는 조림지로 전체 목재의 95% 가량이 조림지에서 생산
- 목재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은 현재 목재수입의 60% 이상을 뉴질랜드산 소나무에 의존

□ 뉴질랜드의 역사

- 마오리족의 정착
 -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폴리네시아인들은 폴리네시아의 동쪽으로부터 1000년과 1300년대경 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 정착민들의 후손은 마오리족이 되어 뚜렷한 고유의 문화를 형성
- 유럽인의 정착
 -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네덜란드의 아벨 타스만으로 고향 제일란트의 이름을 따서 ‘노바젤란디아’라고 명명
 - 영국의 제임스쿱 선장이 1769년에서 1777년에 거쳐 이 지역 답사
 - 1814년 런던에서 선교사가 와서 기독교 교회를 시작했으며, 그 무렵 이곳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속한 식민지였음
- 와이탕이 조약
 - 본격적으로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자 식민에 의한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마오리족과 영국 간에 분쟁이 생겼고, 1840년 식민지 총독 윌리엄 홉슨과 마오리족은 마오리족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조약 체결
 - 와이탕이 조약은 뉴질랜드를 2민족국가로 규정짓는 성격의 것으로, 조약 체결 후 뉴질랜드는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로부터 분리되어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됨
- 마오리 전쟁
 - 1843~1870년 뉴질랜드 토지회사의 지나친 토지 매수가 발단이 되어 두 차례에 걸쳐 마오리족 추장들과 영국군 사이에 전쟁 발발
 - 영국은 마오리족의 반영 감정 완화를 위해 식민지 회의에 마오리족 대표를 참가시키는 등 영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 끝에 1870년 인종 분쟁이 끝나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
- 뉴질랜드 정부 수립
 - 1852년에는 뉴질랜드 헌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섬
 - 1890년대부터 뉴질랜드 국회는 여성의 투표권, 양로 연금 같이 진보적인 법

를들을 발의

- 1907년 영연방 내 자치령의 지위 획득하고, 1930년대부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며 복지 국가로 발전,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 뉴질랜드 지역별 특징

○ 오클랜드(Auckland)

- 뉴질랜드 제1의 국제도시로 태평양과 태즈먼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수상스포츠가 유명
- 뉴질랜드 총 인구의 25%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도시로 상점, 카페, 여가 활동시설이 많음
- 1865년까지 뉴질랜드 수도였으며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 캔터베리 평원의 정원의 도시로 불리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
- 고딕식 대성당과 영국식 공원이 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고풍스럽고 우아한 영국풍의 도시

○ 더니든(Dunedin)

- 남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1848년 식민지 이래로 빅토리아 양식의 중후한 건물들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의 전통이 짙게 남아있음
- 1869년에 세워진 뉴질랜드 최초의 오타고 대학과 뉴질랜드 유일의 위스키 공장 존재

○ 기스본(Gisborne)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연평균 일조시간이 2200시간 이상임
- 1769년 뉴질랜드 최초의 유럽인인 캡틴 쿡이 이곳에 상륙한 이래 1831년에 유럽인의 정착이 시작
- 연중 온화한 기온으로 인해 포도, 키위, 옥수수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

○ 해밀턴(Hamilton)

- 와이카토 지방에 정착한 마오리족과 19세기 이주한 유럽인들 사이에 문화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 전쟁에서 전사한 해군 장교 해밀턴의 이름을 딴 도시
- 타 지역에 비해 파케아백인에 대한 마오리족의 세력이 상당히 강함
- 인버카길(Invercargill)
 - 남섬 최남단에 위치하여 시내 전체가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고 스코틀랜드계 풍의 건물이 많음
- 마운트 망가누이(Mount Manganui)
 - 북섬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온화한 날씨로 인기 여행지임
- 네피어(Napier)
 - 쾌적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인기 휴양지로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유명
 - 아트(Art Deco 장식미술)의 도시
- 퀸스타운(Queenstown)
 - 유명한 관광도시로, 골드러시 시대에 이곳을 찾은 채굴자가 여왕이 살기에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 칭송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
- 로토루아(Rotorua)
 - 화산지대로부터의 유황냄새가 특징적으로 유황의 도시로 하루에 몇 번씩 쏟아 오르는 간헐천이 있음
 - 예부터 마오리족의 문화중심지 역할
- 타우포(Taupo)
 - 뉴질랜드 최장의 와이카토 강을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4월 25일경에 열리는 타우포 송어 낚시대회는 전 세계 낚시꾼을 집중시킴
 - 화산지대의 일부로 그 대지 열을 이용하여 만든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가 있음
- 타우랑가(Tauranga)
 - 뉴질랜드 최대의 광활한 항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한 수화물 전재와

하역시간 배정으로 효율성과 신용도에 있어 세계적으로 호평

- 뉴질랜드 농산품, 원예품, 목재생산품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관문으로 역할

○ 티마루(Timaru)

- 양과 낙농업, 토마토와 밀 재배에 있어 이상적인 기후로 뉴질랜드 최대의 치즈공장, 세계 최대의 제혁공장이 있음

○ 웰링턴(Wellington)

- 북섬 끝자락에 위치하여 남섬을 잇는 페리호들의 동지 역할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수도
- 교통, 문화, 정치, 경제의 요지로서 손색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자랑

□ 뉴질랜드의 자연

○ 기후 : 흰 구름의 땅

- 마오리족이 뉴질랜드를 ‘길로 하얀 구름의 땅’이라고 명명
- 뉴질랜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변과 인접해 있어 온화한 온도, 적당한 강수량, 풍부한 일조량을 나타냄

○ 기온

- 남반구에 위치해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하락하여 최북단 지역의 평균 기온은 15도인데 반해 최남단 지역은 9도이고, 1,2월이 가장 따뜻하며 7월이 가장 추움
- 최북단 지역의 경우 여름동안 아열대 날씨를 나타내며, 남섬의 내륙 산악지역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함
- 기온차가 크지는 않으나 한랭전선이나 열대성 저기압 때문에 날씨가 급변할 수 있어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 할 수도 있음

○ 풍부한 일조량

- 대부분 뉴질랜드 지역은 연간 20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을 나타내며,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는 여름철에는 오후 9시까지 햇빛이 들기도 함

- 일조량이 많은 블렌하임, 넬슨, 베이오브플렌티, 네이피어 지역 등은 전통적으로 질 좋은 와인과 과일 생산지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대기 오염 정도가 현저히 낮아 여름철 동안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

○ 강수량

- 연평균 강수량은 640mm~1500mm사이로 높은 편이지만 1년 동안 고르게 내림
- 북섬의 포버티 만, 호크스베이, 와이라라파와 남섬의 센트럴 오타고는 비가 적고, 밀포드사운드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림
- 눈은 주로 높은 산에 내리는데, 남섬의 남쪽 끝에는 바닷가에도 눈이 내림, 그 밖의 지역에서는 눈을 볼 기회 거의 없음
- 자연그대로의 산림지와 높은 강수량은 뉴질랜드를 최적의 농업과 원예지역으로 만듦

○ 사계절

- 여름: 12월~2월로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하며 건조하고, 낮이 길고 맑으며 밤에는 온화함
- 가을: 3월~5월 여름보다 기온이 조금 시원하여 최상의 날씨
- 겨울: 6월~8월 기온이 차며 비가 많고 습함
- 봄 : 9월~11월 봄은 추운날씨에서 더운 날씨까지 다양하고 봄눈이 녹아 강수위가 높아지는 시기

1.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 개요

-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이를 규제하는 주요 관할 법은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상업적인 어업과 같은 활동은 해외투자법 외에도 별도의 법규에 의해 규제
- 외국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며, 회사, 합자회사(partnership), 신탁(trust)등의 법인도 포함

□ 배경

- 정부정책
 - 과거 뉴질랜드 경제체제는 중앙통제 하에 수입통제, 관세부과, 정부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외시장으로부터 자국경제 보호
 - 1984년 이후 규제철폐, 중앙통제 철폐의 오픈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수입통제를 통한 보호가 거의 없고 정부보조금을 통한 지원도 없음
 -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였고 관계 법령도 개정하여 뉴질랜드 내 외국인 투자 적극적으로 권장
 - 영국이 EU에 가입된 후, 자구책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들과 관계 강화
- 일반 규제사항
 - 외국인 투자가도 뉴질랜드인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일반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법률들은 뉴질랜드인이나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투자 매력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인 고용, 국산화율, 송금, 재투자 및 수출 의무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투자 장벽이 없음

- 인구수에 비해 도로, 항만, 교통통신 등 사회 기간시설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투자환경은 좋은 여건
- 모든 외환규제를 철폐하여 자본금, 수익금, 배당금, 로열티, 이자 등을 외국에서 뉴질랜드나 혹은 그 반대로 송금이 자유로움

○ 투자 장려 지원책

- 뉴질랜드 정부는 건전하고 한결같은 경제정책과 함께 경제 성장률을 높임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경제철학을 보임
- 다른 나라와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 투자할 경우라도 투자 장려를 위한 혜택이 없음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 자유무역 지역도 인정 없음

○ 투자 진출 유의사항

- 자국의 1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동 부분에 대한 투자의 경우 외부에서의 1차산업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
- 이민자 수의 급증에 따라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강화로 인해 장기사업 비자 취득하여 투자진출을 시도하던 목재가공업 등 주요 분야에서 투자에 애로사항 생김
-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규제는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인구가 적은 선진국이어서 인건비가 높아 한국의 제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 ※ 현재도 낙농제품을 위주로 한 원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조업을 위시한 한국 주력산업의 현지투자는 거의 없음

□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해외투자법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를 열거
 - 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투자금액, 투자형태 및 투자부문에 따라 결정
- 뉴질랜드 정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가 아니라면 승인이 됨

- 토지의 사용, 토지의 소유나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의 경우 뉴질랜드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승인

○ 뉴질랜드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는 기관은 해외투자위원회 (OIO)

- 해외투자법에서는 무조건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거절 등 투자 승인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해외투자 위원회에 부여

□ 투자유형

○ 자산, 사업체 투자

- 외국투자자가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내의 자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투자규모가 NZD1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승인 불필요

○ 주식 투자

- 외국인의 뉴질랜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식매입 대전, 회사 발행주식 감정가 총액, 투자 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액이 NZD100,000,000 초과 시
- 투자금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거나, 주식 전체 25%이상 매입 시

○ 토지 투자

- 다음과 같은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그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승인이 필요

-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총 면적이 5헥타르 보다 많을 경우
-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총 면적이 4000m²를 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인 경우
- 토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명의 섬의 일부인 경우
- 토지의 총 면적이 400m²를 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보호지역 등 공공목적을 가진 경우, 사유 개발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대상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이웃에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이 2000m²이상인 경우
- 상업 부동산 투자
 - 뉴질랜드에서 상가건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건물 등 구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의 가치가 NZD1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승인 불필요
- 주거용 부동산 투자
 -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이나 휴양지 별장을 구입하고자 할 때, 위에 언급한 승인 대상의 토지 유형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 승인 불필요
 - 시민권법(Citizenship, 1977)에 의해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어도 뉴질랜드 시민과 동일하게 토지를 구입, 처분가능
 - 뉴질랜드에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뉴질랜드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하는 것은 아님
- 금융기관 투자
 - 금융기관은 은행(bank)또는 बैं킹(banking)이라는 용어를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한, 해외투자법에서 정한 승인 대상이 아니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바로 영업 가능
 -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은행법(Bank of New Zealand Act, 1988)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중앙은행에 등록
 - 중앙은행법은 은행영업 신청서 심사 시 신청자가 금융시장에서 가지는 지위, 자본금, 신뢰성, 운영능력과 신청사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자의 모국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 함께 심사
 - 은행영업 신청자가 외국 회사의 지사이든 현지 법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에는 제한 두지 않으며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도 제한 두지 않음
 - 은행은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과 관련 정보에 의한 제공의 의무 부여
 -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법(Securities Act, 1978)에 의한 절차 및 서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2. 뉴질랜드에서의 사업

□ 개요

- 회사법(Companies Act, 1993)은 회사설립, 관리 및 청산을 관장하는 법규로, 유한 및 무한 책임회사의 설립에 대해 규정
-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구입 혹은 외국기업의 지사를 설립
 - 합작투자
 - 개인자영업자(sole proprietor)로 개인 명의의 사업
 - 신탁(trust)이나 건축조합(building society)또는 산업 및 공제조합(provident society)을 설립
- 뉴질랜드에서 외국법인의 설립은 회사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며, 동 법인은 뉴질랜드 외 지역법인으로 정의
 - 뉴질랜드 내 자회사 설치 및 뉴질랜드 법인 등록(회사법 2장)
 - 뉴질랜드 내 지사 설치 및 외국법인 등록(회사법 18장)
 - 기존 외국법인의 뉴질랜드 법인으로의 변경 및 등록(회사법 2장)
- 지사나 현지법인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번호(IRD Number)를 부여 받아 발생한 영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
- 투자의 성격, 리스크 관리, 납세 부담의 차이 등 투자 마다 고려할 사항이 다르기에 투자 구조 선정 전 전문가와 상의 권함
 - ※ Queen City Law : 뉴질랜드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제공하는 로펌

□ 주식회사의 설립

- 회사법에 의하면 주식에 의해 책임이 배분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책임은 해당 회사에 가지는 본인의 주식 지분의 자본금에 국한
 - 주주가 해당 주식에 해당하는 모든 자본금을 지불한 경우 그 주주는 더 이상

의 추가적인 책임이 없음

- 회사법에는 주주의 수나 필요 자본금 액수에 조건이나 제한이 없으며, 대중으로부터 공모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도 없음
 - 실세 상거래에서는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와 그렇지 못한 비상장회사로 구분
- 뉴질랜드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기소장(Register of Companies)앞으로 규정된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함으로 완료

회사명 승인신청	- 회사등기소에 지정된 양식으로 회사명의 승인을 신청하고, 이름 미승인시 등록 불가 - 회사등기소장은 기타 법률에 위촉되거나, 다른 회사 이름과 같거나 거의 같을 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승인 거절 가능
등록서류제출	- 회사이름의 승인을 받으면,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회사 등기소장에게 다음의 등록서류를 제출함으로 회사성립이 완료 됨 : 회사명 승인서, 등록 신청서, 주주 및 이사 동의서, 이사 확인서, 회사정관 (의무사항 아님)
등록신청서	- 등록 신청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다음의 사항을 필수 기재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의 이름과 자택주소, 주주별 소유 주식의 수, 회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회사 서류 송달 주소
주주 및 이사동의서	- 지정된 양식을 사용한 모든 주주 및 이사의 동의서가 필요, 반드시 한명 이상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는 최소 18세 이상 - 주주는 주주가 됨과 주식을 인수함에 동의해야 하고, 이사는 이사로 등재됨에 동의해야 함
이사확인서	- 모든 이사는 이사의 직위를 가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함
회사정관	- 회사 정관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따로 등록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정관은 회사법에 규정된 조항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인정

- 규정된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 등기소장은 회사 설립을 승인
 - 회사가 등록되면 회사등기소장은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유한임이 표기됨
 - 등록된 날부터 그 회사 명의로 영업 가능

□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설립

○ 합작투자 회사의 구조

- 뉴질랜드에서 합작투자라 함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본이나 물자를 특정목적의 사업에 함께 투자하는 약정을 의미
- 합작투자는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짐
 -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형태의 합작투자
 - 동업기업 형태의 합작 투자
 -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형태의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 법인 형태의 합작투자

- 회사법의 요건이 법인 형태의 합작투자에 적용
- 회사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합작투자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 합의서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동업기업 형태의 합작 투자

- 동업기업법(Partnership Act, 1908)에 의하면 동업기업이란 영리라는 공동 목적하에 영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 각 당사자는 개인적인 책임은 물론 연대적인 책임을 지며, 각 당사자의 행위는 동업기업 영업뿐 아니라 타방 당사자를 구속
- 동업기업 형태의 합작투자는 당사자가 최대 25명
-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업기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작투자 정립
 - 계약서에는 동업기업의 목적, 각 당사자의 참여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리구조와 운영에 대한 규칙, 투가 지간 등 포함

○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형태의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 동업기업 형태의 합작투자처럼,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
- 동업기업이 아닌 계약만으로 인한 합작투자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없으며, 자산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비율로 나누어 소유

○ 합작투자에 적용되는 규정

-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투자 형식에 의한 투자를 할 경우 해외투자법이나, 투자

의 성격에 따라 수산업법(Fisheries Act, 1983),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1977)등이 적용

- 외국기업 지사로 등록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계속적으로 합작투자를 직접 영위할 수는 없음

□ 외국기업 지사의 등록

- 회사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사로 등록을 해야 함
 -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규정은 외국기업의 지사에 적용되지 않음
 - * 외국기업: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회사를 일컫음
- 외국기업은 회사등기소로부터 그 기업의 이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는 뉴질랜드 영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활동 개시 불가
- 외국기업은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등록신청서를 등기소에 반드시 제출
 - 신청서에는 외국기업명, 주주들의 이름 및 자택주소, 외국기업의 뉴질랜드 내 주 사무실의 주소, 회사이름승인 통지서, 뉴질랜드 밖에서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증거, 해당 법인의 정관
- 뉴질랜드 지사를 통해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에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의무사항 존재
 - 회계자료의 제출: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1993)에 의해, 외국기업의 이사는 외국기업 및 관련 그룹의 재무제표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사본을 회사등기소장 앞으로 제출
 - 전체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지주 회사일 경우 그룹 통합 재무제표(외국기업의 이사가 확인한 것), 뉴질랜드에서 비롯한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연례보고서 제출: 등록한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회사등기소장이 정한 달에

- 연례보고서 제출, 지사가 설립된 국가명 · 지사명 · 지사의 수 기입
- 연회비 납부: 회사등기소장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연회비 납부
- 이름의 명시: 지사가 제출하는 모든 통신문 및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작성된 모든 서류에는 지사명, 지사가 설립된 국가명이 기입

□ 외국기업의 뉴질랜드 현지법인에게 부여되는 법률의 의무

- 회계자료의 제출
 - 재무보고법에 의해 현지법인의 이사는 현지법인 및 관련 그룹의 재무제표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사본을 회사등기소장 앞으로 제출
 -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필요에 따라 현금흐름표 포함
-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제출
 - 등록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현지법인은 매년 연례보고서 제출
 - 현지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현지법인의 서류 송달 주소, 주식자본금 요약, 이사들의 인적사항, 과거와 현재의 이사명단, 최종 연차 총회일
- 회사등기소장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연회비 납부
-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 회계마감일 후 5개월 이내에 작성, 현지법인의 연차총회 일로부터 30영업일 이전에 수신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발송
 - 재무제표 사본, 이사보고서, 감사보고, 이사들의 인적사항, 연수입이 NZD 100,000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현지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통신문과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작성된 모든 서류에는 현지법인 명을 기입

□ 계약 및 고용

- 외국인과의 계약
 -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소유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만을 대상

으로 하는 별도의 법규는 없음

- 외국인 투자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은 뉴질랜드의 기타 기업인과 그 기업체계 적용되는 동일한 법규의 적용 받음

○ 준거법의 결정

-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습법의 원리를 적용
-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 가능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을 채택하고 있어, 어떤 상품매매에 관한 국제계약에는 이 협약이 적용

○ 분쟁의 해결

-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분쟁 발생 시 이를 법원(Court)에 제소하거나 중재(Arbitration or Mediation)에 회부할 수 있도록 약정

○ 외국인을 위한 취업허가(work Permit)와 비자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허가 필요
-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를 받기는 용이
-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고용주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취업허가가 발급
- 어떠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 취업이 허용

○ 고용계약

-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뉴질랜드의 일반 고용 법규가 적용, 체결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성문법규와 관습법이 모두 적용
- 기본적인 노동관련 법규는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이며 이외에도 공장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공휴일, 최저임금, 최소노동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률 존재

- 피고용인은 고용주와 개별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작업장에서는 단체계약의 일원으로 계약 체결

3. 무역

□ 수입 및 수입추가비용

○ 수입

- 자국경제를 국제 자유경쟁에 노출시키기 위해 뉴질랜드는 수입허가제에 의한 보호무역정책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정책으로 전환
- GATT(관세 및 무역일반협정) 회원국이며 무역기술장벽, 정부보조금, 상쇄관세, 반덤핑, 관세평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를 따름
-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 기타징수금이 없음
- 일반적으로 GST라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부과

○ 수입추가비용

-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CIF가격+관세금액에 GST를 부과
- GST는 상품이 통관하는 시점에 납부하나, 수입상이 세관에 관세후납 적용 신청 후 승인 받을 시엔 통관 후 납부 가능

○ 수입상은 따로 등록 불필요

□ 덤핑과 상쇄관세

- 국제 무역은 자유화되었지만, 해외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쟁에 의한 뉴질랜드 자국 산업의 피해는 금지
- 덤핑 및 상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1988) 실시
 - 이는 WTO의 덤핑방지 및 상쇄관세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둠

□ 뉴질랜드와 호주간 인접경제관계

- 1983년 뉴질랜드와 호주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향후 자유무역을 하기로 협정 체결
-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는 상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용역의 경우도 자유무역 협약이 적용

□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

- 1995년 10월 1일에 발효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의 조인국
 - 국제 물품 매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 협약에 준거한 매매계약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권리, 의무 및 양자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 규정
- 매매계약 쌍방이 UN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무역에 대한 규제

- 농산품
 - 뉴질랜드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의 수입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
 - 어떤 물품은 농수산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유해물질법을 충족시켜야 통과 가능
- 포장 물질에 대한 요건
 - 수입되는 물건의 포장재로 특정 물질은 사용 못하도록 규정
 - 토양, 토탄, 건초, 풀, 이끼, 삼베, 동물이나 토양·농산물 폐기물과 접촉된 물질은 포장에 사용 불가
 - 목재용기, 화물 운반용 팔레트, 크레이트 등으로 만든 포장재 사용 시 나무껍질이나 진균이나 병충해의 피해 받은 흔적이 없어야 함
- 라벨에 대한 요건
 - 식품이나 약품의 라벨은 반드시 식품법(Food Act, 1981) 및 의약품법(Medicines Act, 1981)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충족

- 수입상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고 정확히 표시할 의무
- 소비자정보표준규정(1992)에 따라 특정 의류와 신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
-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에 따라 일반인이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보증 필요

4. 기타

□ 노무 관리

- 노동법 및 노동시장
 - 2003년 12월에 개정된 현 노동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노동자가 보호되고, 사용주가 기존의 고용 관계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기본적인 고용여건
 - 광대한 영토에 비해 400만 명 정도뿐인 인구조로, 인력이 부족하여 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민자를 통해 인력난 부족을 해소 중
 - 인건비 및 서비스 요금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급인력과 단순인력 사이의 노동시장 차별화 현상 지속
- 고용절차 및 인력수급
 -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은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10인 이하의 회사비율이 96%을 넘음
 - 2002년 이래로 인구유입이 계속 감소세를 보여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기술자를 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책이 요구됨
 - 일반적인 직원 채용방식으로는 대부분 사내문건(사내이메일, 사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

○ 외국인의 고용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허가를 지녀야 함
-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피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취업허가 발급

○ 임금수준

- 2012년 평균 주급은 NZD 1020
-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 형태를 보여주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계속됨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금융시장 개황

-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통화의 발행과 금융 및 통화정책을 담당
- 경기과열 및 인플레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총 1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뉴질랜드의 공금리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많은 외국의 투자자금이 유입

○ 은행제도

- 상업은행 중심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호주 등 외국계 은행이며, 이들 은행은 중앙은행 지급준비율 엄수는 물론 외환 신고 및 업무감사 등을 받게 됨

○ 환율정책

-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985년 변동환율체제 전환이후 한 번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 없다가 2004년 뉴질랜드 달러화의 급격한 변동 완화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새로운 외환정책 발표
-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짐

○ 자금조달

- 주식시장(NZX)과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

1. 복지혜택

□ 뉴질랜드는 다양한 연금과 수당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발달

- 복지자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되며, 세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 가정적 목적의 수당, 부양수당, 무능력자 수당 등이 지급
- 호주, 영국, 네덜란드, 니우에, 토켈라우, 쿡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특별협정으로 인해 수당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음
- 뉴질랜드에서 복지 혜택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Work and Income 취업을 돕고 생계비 보조
 - Child, Youth and Whanau Service 청소년들에게 복지혜택 제공
 - ACC에서 사고 후 인명피해 보상

□ 연금의 종류

- 55세 이상 수당(Fifty-Five Plus Benefit)
 - 만 55세 이상인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노후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 노후연금(National Superannuation)
 - 1994년 4월 1일 이후 만 61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는 사회복지제도로, 2001년부터는 자격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높임
 -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20세 이후 적어도 10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5년은 50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함
- 유아 보조 연금(Child-care Subsidy)
 - 자녀가 5세 이하인 일정소득 이하의 맞벌이 가정에서, 주 6일 이상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는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 수당의 종류

○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 18세 이상의 나이에서 실직 후 계속 구직중이나 노후연금 수급 대상은 아닌 자를 대상으로, NZ Employment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Labor에 구직 중임을 신청해야 함
- 16세 또는 17세의 나이 중 결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도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자격이 박탈 됨
 -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을 사직한 자
 -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2회 이상 거절한 경우
 - 직장 알선 인터뷰 약속을 2회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 전 직장에서 주급 399불 이상을 받은 자

○ 병가 수당(Sickness Benefit)

- 질병이나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 자녀 및 양육 수당(Family Support)

-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연간 35000불을 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음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만 16세 이상인 정규과정 학생으로 허가된 교육기관서 인정한 교육과정 이수하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 학생 수당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됨

○ 고아수당(Orphans Benefit)

- 고아가 16세가 될 때까지 고아의 양육자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환자수당(Invalids Benefit)

-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장기적인 수당

○ 과부수당(Widows Benefit)

- 가족 수당을 포함한 다른 수당과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비보조수당(Accommodation supplement)

- 16세 이상으로 렌트비를 내고 있는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렌트비 지원

○ 장애인 수당(Disability Allowance)

- 장애인들에게 지급

○ 청년 수당(Youth Benefit)

-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6~17세 청년 대상으로 지급

○ 장례비용수당(Funeral Grants)

-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에게 장례비용 지급

□ 사고 복구 및 보상 보험 공사(ACC: Accident Rehabilitation & Compensation Insurance Corporation)의 인명피해 보상

○ 뉴질랜드에서는 발생하는 대인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ACC에서 담당

- 시민권자, 영주권자, 방문자까지 포함되며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모두 적용하며, 잘잘못을 따지지 않음

- ACC 재원은 정부에서 자동차 등록세, 봉급자의 급여, 자영업자의 소득 등에서 세금의 형태(ACC Levy)로 징수함

○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해의 성격이 ACC ACT 1992에서 정한 사고, 의료사고, 직장에서 발생한 장애·질병·감염, 형사 범죄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장애임

○ ACC보상은 주급보상, 잠재소득 손실보상, 독립수당, 교통비 보상, 의료 진료비 보상, 가사업무 보상, 자녀양육보상, 간병사 보상, 사망보상 등

2. 보험

□ 뉴질랜드의 의료보험 제도

- 뉴질랜드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2년 이상의 취업허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국공립병원을 통한 일체의 수술비, 병원비가 무료
 - 국공립병원을 통한 환자의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제반과정이 느림
 - 응급환자와 일부 급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하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검사나 수술도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 장시간 대기 필요
- 뉴질랜드의 의료보험은 순수 사립 보험으로, 의료보험 별도 가입자는 병 증세가 발생 시 사립병원을 통해 바로 검사나 치료를 받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 뉴질랜드의 진료기관은 세 가지로 구분
 - 일반가정의(General Practitioner)를 통한 1차 진료
 - 전문의(Specialist) 혹은 전문검사를 시행하는 2차 진료
 - 전문검사 결과 수술 처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3차 진료
- 뉴질랜드는 어느 범위에 진료기관의 진료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는지는 개인의 선택

□ 일반 보험

- 자동차 보험
 - 인명상해에 따른 치료비나 보상청구는 ‘ACC Act1992’에 의거 한 정부기관인 ACC상해보험공사에서 전담
 - 자동차 보험은 대물과 자차보상으로 되어있으며, 뉴질랜드 운전면허를 갖고 있어야 계약 시에 혜택 받을 수 있음
- 주택보험
 - 자가를 소유하면 대부분 가입을 하며 특히 주택용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은행에서 용자가 됨
 - 계약내용 특히 보상범위를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하며 보상 시 가입자 면책

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감소

○ 가재도구 보험

- 가재도구의 도난이나 파손시의 보상에 대한 보험
- 보상을 위해 각종 영수증을 모아두고 중요 가재도구의 사진도 갖고 있으면 보상 요구 시 편리

3. 교육

□ 기본적인 여건

-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거주지에 근접한 초, 중등 및 고등학교에 자녀 입학 가능
 - 2001년 이후 외국 유학생 및 이민자의 급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에 3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입학 허가 받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
-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무상이지만(유학생 제외) 찬조금으로 운영
- 유명 사립학교와 종료계의 사립학교의 경우 허가 심사 및 상당한 학비와 기여금 지불 필요

□ 뉴질랜드 교육제도 안내

- 개요
 - 유치원은 만 4세까지이며 만5세부터 입학하는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2년, 고등학교 6년이며 의무교육임
 - 대학교는 종합학교와 교육대학, 기술단과대학인 전문대학 세 종류로 구분되며, 종합학교는 뉴질랜드 전국에 모두 7개이고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임
- 유치원

- 공립은 자리가 매우 부족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4살이 될 때까지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어려움
- 사립은 일부 유명 사립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입학 가능하나 학비는 비싼 편
- 처음입학하면 오후에 수업을 받는데 일주일에 이틀내지 사흘정도 수업 받다가 생활이 익숙해지면 등교회수 늘어남
- 4살 반 정도 되면 아침반으로 이동하여 일주일에 5일 수업
-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유치원이 정식으로 인가 받은 곳인지 확인 필요

○ 초등학교

- 대부분 어린이들이 만 5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 입학
- 교과서가 없고 주로 읽기와 쓰기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놀게 함
- 이민자의 자녀, 유학생, 영어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ESOL(영어 능력 향상 교육) 운영하며, 별도 비용은 들지 않음

○ 중학교

- Intermediate School이라 부르며, 2년 과정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우리나라의 학년과는 무관하게 나이를 따져 입학학년을 정함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교육하는 학교도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하는 학교도 있음

○ 고등학교

-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대개 비슷하며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학력에 이르도록 학생 지도
- 9학년과 10학년의 경우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학교별로 몇 개의 선택과목 지도
- 11학년부터 학생들은 NCEA(국가 교육성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12학년과 13학년엔 심화과정을 공부

○ 대학교

- 기술단과 대학: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입문과정에서 학위과정까지 다양한 단계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 교육대학 : 교사가 되기 위한 특수교육을 시행
- 종합대학: 8개의 종합대학이 존재하며,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구과정이 있음

4. 현지 정착

□ 현지 생활 여건

○ 주거

- 주거 희망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 구매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에는 주택가의 4-5%정도 수수료
-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며, 임대료는 더 비싸고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 점검

○ 식품

-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쇼핑물에 생필품 체인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공휴일 없이 매일 개장하는 매장이 많아 한국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음
- 한국 식품들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형태의 매장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식당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한국 식당가 거리도 형성

○ 문화생활

- 지역별로 축구 경기장, 스포츠 센터,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까운 숲이나 공원, 해변등지산책 등 다양한 레저 활동 즐길 수 있음

○ 치안

- 한밤중의 외출도 양호한 편이나 대부분 퇴근 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화 됨

□ 뉴질랜드 생활시 유용한 웹 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뉴질랜드 이민성, 비자에 대한 모든 것
www.realestate.co.nz	집, 렌트를 구할 때
www.cab.org.nz	시민무료상담소
www.nzkorea.org	뉴질랜드 한인화
www.loreapost.co.nz	한인사회의 이모저모
www.nzherald.co.nz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신문
www.maxx.co.nz	버스, 기차 등의 시간표와 요금
www.nzpost.co.nz	우편서비스
www.telecom.co.nz	전화, 인터넷 신청
www.megatel.co.nz	인터넷, 모바일서비스 신청
www.seek.co.nz	최대의 채용정보사이트



제 4 장 부록

1. 한국과 뉴질랜드의 주요 협정
2.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
3. 참고 사이트
4. 출처

1

한국과 뉴질랜드의 주요 협정

□ 주요협정 정리

- 1967년 7월 : 무역경제기술협력 협정
- 1978년 3월 : 어업협정
- 1978년 12월 : 국제운수소득 면세 협정
- 1981년 11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3년 8월 : 항공협정
- 1994년 8월 : 비자면제협정
- 1997년 4월 : 임업협력협정
- 1999년 5월 : 취업관광사증 협정
- 2000년 3월 : 형사사법 공조 협정
- 2001년 5월 : 범죄인 인도 협정

□ 최근의 주요 협정체결 현황

- 2011년 한-뉴질랜드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
 - ※ 상호인정협정 : 관세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한국에서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뉴질랜드에서는 secure export scheme: SES) 회원으로 인증 받은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가에서 자국에서와 같은 신속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경쟁력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 대지진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AEO 공인기업에 대해 특별통관 허용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2.1(화) 오전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한-뉴 통상장관회담을 개최
 - 한-뉴 FTA 협상 현황 평가 및 향후 진전 가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1983.04.22]

1981. 10. 6 서울에서 서명

1983. 4. 2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1983.04.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983.04.22]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뉴질랜드에 있어서는

- (1) 소득세(2)초과유보세(이하 "뉴질랜드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983.04.22]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나. "뉴질랜드"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곽 도서를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본토를 의미하나 쿡섬과 니우에 또는 로켈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또한 뉴질랜드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그들의 탐사목적상 또는 해양, 해상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뉴질랜드가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외곽도서를 포함하는) 뉴질랜드 본토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뉴질랜드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뉴질랜드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수권대리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수권대리인을 의미한다.

차.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뉴질랜드에 관해서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진 개인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한국에 관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목적상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요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탁자가 동 체약국에서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배당.이자 또는 사용료는 동 수탁자에 의해 수익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3. 이 협약에서 "뉴질랜드의 조세" 및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각각의 조세를 의미한다.

4. 일방 계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계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983.04.22]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계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계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계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계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계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계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계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계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계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계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계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

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983.04.22]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이나 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이나 건설이나 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활동을 영위하거나

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12개월을 초과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향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983.04.22]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르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 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 [1983.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든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83.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983.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983.04.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채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채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채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채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 채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동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채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 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채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채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채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983.04.22]

1.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채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채약국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정부 또는 중앙은행 포함)가 수취하는 이자는 동 타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의해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된 금융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대부 또는 채권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조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와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983.04.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전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라디오방송과 관련된 사용을 위한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

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재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이득】 [1983.04.22]

1. 제6조 제2항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이나 이득에 대하여는 동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된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 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또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나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 또는 소득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2항,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983.04.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

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983.04.22]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임금과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

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983.04.2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연예인 및 운동가】 [1983.04.22]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나 비영리단체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 단체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983.04.22]

1.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에서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983.04.22]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채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타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함으로써 정부적 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 체약국의 기타 기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및 견습생】 [1983.04.22]

1.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채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만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채 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에 대하여 동 일방채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타방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일방채약국의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원조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조사 또는 훈련 목적만으로 동 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 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제21조 【교수 및 교직원】 [1983.04.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를 위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983.04.22]

본 협약의 전 각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만약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23조 【이중과세방지】 [1983.04.22]

1. 한국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당해 기간에 시행중이고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뉴질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 한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 직접적이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 뉴질랜드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되는 뉴질랜드내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여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뉴질랜드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

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뉴질랜드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가. 당해 기간에 시행중이고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되는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뉴질랜드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뉴질랜드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뉴질랜드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하여(배당의 경우에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 직접적이든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지,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여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뉴질랜드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뉴질랜드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본협약의 서명일에 존재하는 뉴질랜드의 세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배당일 것) 뉴질랜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본조의 목적상 본 협약에 따라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 소득 또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법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

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제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983.04.22]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 통고일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위의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교환】 [1983.04.22]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 있어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와 같은 인이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 변론이나 재판관의 결정에 있어 공개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

나.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공공질서)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6조 【외교관 및 영사관】 [1983.04.22]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7조 【적용지역의 확대】 [1983.04.22]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각 체약국이 국제관계상 책임을 지는 영역으로서 동 영역이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성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동 영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그들의 헌법절차에 따른 기타 방법으로 교환된 각서에서 양 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되는 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양 체약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29조에 의거한 어느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본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도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

3. 제2조제2항은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어떠한 영역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떠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제28조 【발효】 [1983.04.22]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웰링톤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

나. 뉴질랜드에서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소득
 년도에 부과되는 소득

제29조 【종료】 [1983.04.2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서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서는

- (1) 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
 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 (2) 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

나. 뉴질랜드에서는 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소득년
 도에 부과되는 소득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일년 시월 육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1983.04.22) 【 】 [1983.04.22]

의 정 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

드 정부간의 협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2조에 관하여

(가) 제1항 세항(가)의 목적상 본 협약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나) 제1항 세항(나)의 목적상 뉴질랜드 소득세는 특별 배당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7조에 관하여

제7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이 어떠한 형태의 보험사업이건 동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련되는 시행중인 체약국의 법 규정의 운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만일 그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련되는 이 협약의 서명일 당시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이 개정되면(동 법의 일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문이외에) 양 체약국은 본항의 그러한 적절한 수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3. 제8조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어획·준설 또는 예인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제10조에 관하여

장래 여타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시 뉴질랜드는 본조항에 규정된 이하의

비율로 원천지국에서의 배당에 대한 과세를 제한할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지체 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양 정부는 대한민국에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 협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동 조항을 검토한다.

5. 제12조에 관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적, 상업적 또한 과학적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동 장비의 이용에 관련되는 생산·판매·작업·시행·성과 및 기타 유사한 기준에 의존하는 범위의 지급금을 제외하고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의 이윤으로 간주됨을 양해한다.

6. 제13조에 관하여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이 주로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에 대한 주식·권리·법인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양해한다.

7. 무차별

이 의정서의 서명일 이후 어느 때에 뉴질랜드가 어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무차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통지하고 현재의 협약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경우와 같은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일년 시월 육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1997.10.10) 【】 [1997.10.10]

제 2 의 정 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81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을 고려하여,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약의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서 언급된 소득으로 한
국에서 소득을 얻은 뉴질랜드 거주자는, 뉴질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이 대한민국
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회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
주하는 것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어떤 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23조 4항을 남용할 목적으로
어떤 약정이 체결된 경우

나. 한국의 거주자나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이익 의
정도

다. 부정의 방지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

라. 관련 뉴질랜드 거주자의 어떠한 이익 제기를 포함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
국이 어느 사례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제 2 조

이 협약 제23조 4항을 삭제하고 아래 규정으로 이를 대체한다.

"4. 제2항의 목적상, 그리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소득항목에 대하여, "납부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범위내에서 상기 한국의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 조

본 제2의정서 제1조 및 2조는 동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 조

1. 양 체약당사자는 동 제2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호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2의정서는 동조 1항에 언급된 통보일 중 나중에 통고된 날이후 부터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자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7월 14일 웰링톤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 정부 및 기관

- 뉴질랜드 정부(<http://newzealand.govt.nz/>)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main/index.jsp>)
-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의소(<http://www.kiwichamber.com/>)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 뉴질랜드 관광청(<http://www.purenz.co.nz/>)
- 뉴질랜드 통계청(<http://www.stats.govt.nz/>)
- 뉴질랜드 관세청(<http://www.customs.govt.nz/Pages/default.aspx>)
- 재뉴상공인 연합회(<http://www.kccanz.org>)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 대한민국 국세청(<http://www.nts.go.kr/>)

□ 그 외 블로그 및 검색엔진

- <http://cafe.naver.com/tauranga33/552>
- 찰리&영의 뉴질랜드 살아가기 블로그(<http://blog.daum.net/nzwork>)
- 뉴질랜드 세무/회계 블로그(<http://nzbizinfo.tistory.com>)
- 뉴질랜드 헤럴드(<http://www.nzherald.co.nz/>)
- 내셔널 비즈니스 리뷰(<http://www.nbr.co.nz/>)
- NZOOM(<http://tvnz.co.nz/>)
- 구글(<http://www.google.co.kr/>)

- 네이버(<http://www.naver.com/>)
- 다음(<http://www.daum.net/>)

4 | 출처

II. 뉴질랜드 조세제도

2. 법인세

- Pwc. *Tax facts & figures New zealand 2013*, 2013. p17~23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 뉴질랜드 세무/회계 블로그(<http://nzbizinfo.tistory.com>)

3. 개인소득세

- Pwc. *Tax facts & figures New zealand 2013*, 2013. p9~16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뉴질랜드 세무/회계 블로그 (<http://nzbizinfo.tistory.com>)

4. 부가가치세

- Pwc. *Tax facts & figures New zealand 2013*, 2013. p58~60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5. 국제조세

- Pwc. *Tax facts & figures New zealand 2013*, 2013. p
- Pwc.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013/14*, p634~645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6. 전자상거래와 조세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7. 기타세제

- Pwc. *Tax facts & figures New zealand 2013*, 2013. p10~11
-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 뉴질랜드 세무/회계 블로그(<http://nzbizinfo.tistory.com>)
- 뉴질랜드 헤럴드(<http://www.nzherald.co.nz/>)

II. 기타 뉴질랜드 정보

-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main/index.jsp>)
- 주한 뉴질랜드 상공회의소(<http://www.kiwichamber.com/>)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 재뉴상공인 연합회(<http://www.kccanz.org>)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 <http://cafe.naver.com/tauranga33/552>
- 찰리&영의 뉴질랜드 살아가기 블로그(<http://blog.daum.net/nzwork>)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뉴질랜드에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뉴질랜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7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 작성 및 편집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행정사무관 성혜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행정사무관 이지민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행정사무관 안수아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0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